



【 3 세션 】



일본과 해양영토문제

남 쿠릴열도 : 러시아의 입장과 독도에의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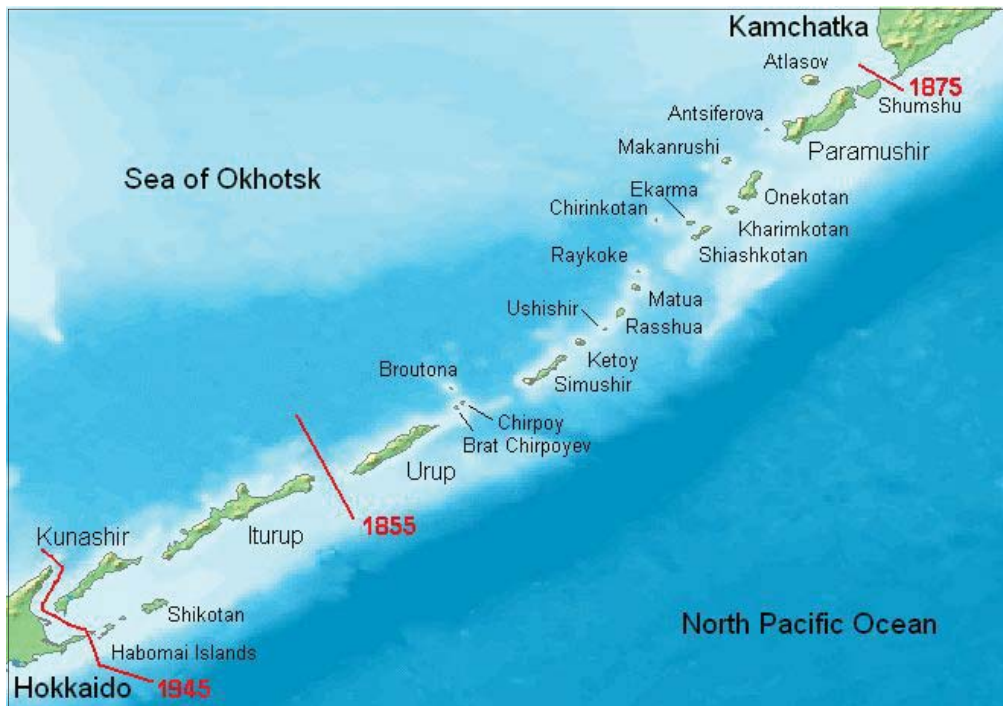
배 규 성*

1. 분쟁의 대상 : 쿠릴열도의 섬들

대부분의 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쿠릴열도(Kuril chain)는 캄차카반도의 남쪽 끝에서부터 홋카이도 섬의 북동쪽 끝까지 뻗어있는 3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¹⁾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이들 섬들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쿠나시리/쿠나쉬르와 에토로후/이투루프는 전통적으로 일본에 의해 홋카이도 섬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이들 두 섬과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러·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는 남쿠릴열도, 또는 일본측의 용어인 북방영토(북방 4개도)²⁾이다.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1) Japan, Foreign Office, *Treaties and Conventions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Other Powers together with Universal Conventions, Regulations and Communications since March 1854* (Tokyo: 1884); George Alexander Lensen, *Russia's Japan Expedition of 1852~1855*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55); S. P. Krasheninnikov, *The History of Kamtschatka and the Kurilski Islands, with the Countries Adjacent*, translated by James Grieve (Chicago: Quadrangle Books, 1962); George Alexander Lensen, *The Russian Push Toward Japan: Russo-Japanese Relations, 1697~1875* (New York: Octagon Books, 1971); Rosemary Hayes, *The Northern Territorial Issue* (Arlington, Virgini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72); V K Zilanov et al., *Russkie Kurily: istoriia i sovremennost* (Moskva: 1995).
- 2) 통상 러·일간의 북방영토 문제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양국간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할린과 쿠릴열도 상의 도서 전체를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통상 러·일간 북방영토 문제라 불리는 남 쿠릴열도상의 4개 도서만을 의미한다. 강원식,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울: 일신사, 1998) p.198. 본 논문에서 말하는 북방영토는 남 쿠릴섬 4개 도서, 즉 Iturup (Etorofu Island, Итуруп, 択捉島), Kunashir(Kunashiri Island, Кунашир, 国後島), Shikotan(Shikotan Island, Шикотан, 色丹島), Habomai rocks(Habomai Islands, острова Хабомай, 齒舞諸島)로 한정한다.



2.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사실과 분쟁의 과정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사실과 분쟁의 과정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년도	사건/사실과 조약	러시아(점유)	일본(점유)	기타
1855	러·일 통상 및 국경조약(Treaty of Shimoda)	우루프 이북 쿠릴열도	남쿠릴열도	사할린 공동소유
1875	쿠릴열도와 사할린 교환(Treaty of St. Petersburg)	사할린 섬 전체	쿠릴열도 전체	
1905	러·일전쟁/포츠머스 강화조약 (Portsmouth Peace Treaty)	북부 사할린	쿠릴열도 전체와 남 사할린	
1945	태평양전쟁/알타회담	쿠릴열도 전체와 사할린 전체		일본은 북방 4개 섬이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1855년 러·일 통상 및 국경조약(일명 Treaty of Shimoda)으로 남쿠릴열도 4개도는 일본이 소유하고, 우루프 섬 이북의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었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전체와 그동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할린을 맞교환하는 썬트 뻬쩨르부르크 조약(Treaty of St. Petersburg)을 통해 사할린 섬 전체는 러시아가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모든 쿠릴열도는 일본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포츠머스 강화조약(Portsmouth Peace Treaty)에서 일본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섬의 남부지역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된 그 날 소련은 마주대공세를 시작했고, 태평양전쟁에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쿠릴열도 전체와 사할린 섬 전체를 소련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북방 4개 섬이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련에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국 48개국과 일본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2)에 따르면,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주장을 포기해야만 했지만³⁾,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⁴⁾ 일본은 적어도 분쟁대상 섬들 중 일부, 즉 하보마이와 시코탄 그리고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는 쿠릴열도의 일부가 아니고 따라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은 2차 세계대전 말기의 연합국의 합의(알타협정)와 여러 국제조약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이것이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요지이다.

소련의 태평양전쟁 참전을 위한 미·소협상이 개시되자, 쿠릴열도를 둘러싼 세기의 분쟁이 재부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쟁당사국들이 아닌 미국이 이들 섬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행위자가 되었다. 카이로 선언, 테헤란 회의, 알타 협정을 포함한 오랜 일련의 연합국들간의 협상과 협정을 통해, 소련은 러시아인들이 쿠릴열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준 외교적 거미줄을 쳤고, 미국은 모호한 파트너가 되었다.

소련이 불참한 1943년 10월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⁶⁾은 최초로 전후 영토처리문

3) "The history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RIA Novosti, 1 May 2009. <http://en.rian.ru/analysis/20090501/121506723.html>. 검색일(2011.03.25)

4) "Text of Gromyko's Statement on the Peace Treaty", New York Times, September 9, 1951.

5) "Japan's undermining of Russian sovereignty not tolerated" - Medvedev, <http://rt.com/politics/japan-s-undermining-of-russian-sovereignty-not-tolerated-medvedev/> ; "О проблеме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в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 July 2005. http://www.mid.ru/ns-vnpop.nsf/osn_copy/511967C89F5D135EC325704300315459. 검색일(2011.04.12)

제(territorial acquisitions)를 제기했다.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번 전쟁에 참전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어떤 이익도 탐하지 않고, 영토적 팽창의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by violence and greed) 획득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⁷⁾ 일반적인 역사적 주장에 따르면,⁸⁾ 테헤란 회의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쿠릴열도는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일본에 제공되었고(awarded), 따라서 소련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이 소련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수용했다.

1945년 2월 11일 얄타회담 이틀째, 루즈벨트는 스탈린과 밀실 비밀회담에 들어갔고, 여기서 쿠릴열도의 운명을 포함하여 전후 세계의 양극적(이것은 나중에 역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운명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스탈린과 루즈벨트 및 처칠이 서명한 최종 얄타협정은 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소련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 보였다. 얄타협정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소련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동맹국측에 가담하여 대일전쟁에 참전한다...쿠릴열도는 소련에 양도될 것이다.”⁹⁾

비록 역사가들이 루즈벨트가 ‘쿠릴’이란 이름이 어떤 섬들을 포함하는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얄타협정이 쿠릴열도의 “모든 섬들”이 소련으로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중요한 핵심이 모호하게 남았기 때문에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모호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당시 루즈벨트는 소련이 바로 이 핵심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새로운 쿠릴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의도했을 것이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소·일간 그런 협정이

6) 1차 회담은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미국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회의에 참석했고, 1차 회담 이후 테헤란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이 회담을 가졌다. 2차 회담은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루스벨트와 처칠은 터키의 이노뉴 대통령을 초청하여 회담을 가졌다.

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3, the Conferences of Cairo and Teheran* (Washington: 1961), pp.448-49.

8) 워싱턴을 떠나기 전, 국무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웰레스(Sumner Welles)는 루즈벨트에게 쿠릴열도는 러·일전쟁 후 1905년 일본에게 넘어갔다고 잘못 보고했다. Rosemary Hayes, *The Northern Territorial Issue* (Arlington, Virgini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1972) p.6; 루즈벨트는 명백하게 일본이 러·일전쟁 기간 중 쿠릴열도를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David Rees, *The Soviet Seizure of the Kuril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5), pp.61-62.

9) 11 February 1945 copy of the Yalta Agreement,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은 이 논쟁적인 섬들이 여전히 일본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후 전개되는 논리들이 바로 이런 미국의 논리인 것이다.

3. 남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루스벨트의 양도와 트루먼의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1)

역사가들은 1945년 2월 루즈벨트가 얄타(협정)에서 쿠릴열도 전부를 스탈린에게 넘겨주었다고 평가했다.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먼은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의 항복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명령 1호를 발표했다. 이 명령에서, 트루먼은 쿠릴열도의 일본군들이 누구에게 항복할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만주와 조선과 사할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만주와 38선 이북의 조선 및 사할린(카라후토)에 있는 일본의 상급 사령관들과 모든 지상군, 해군, 공군, 보충대는 소련극동군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하라.”¹⁰⁾

그러나 스탈린은 계속해서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트루먼을 밀어붙여 1945년 8월 19일 일반명령 1호의 개정을 얻어냈다. 스탈린을 달래기 위해 트루먼은 소련군이 쿠릴열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일반명령 1호에 동의했다. “만주와 38선 이북의 조선, 사할린(카라후토) 및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의 상급 사령관들과 모든 지상군, 해군, 공군, 보충대는 소련극동군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하라.”¹¹⁾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스탈린을 달래려는 마지막 시도에서, 트루먼은 1945년 8월 23일 ‘쿠릴열도’ 앞에 “모든(all)”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세 번째로 개정된 일반명령 1호를 발표했다. “만주와 38선 이북의 조선, 사할린(카라후토) 및 쿠릴열도의 모든 섬에 있는 일본의 상급 사령관들과 모든 지상군, 해군, 공군, 보충대는 소련극동군 최고 사령

10) 15 August 1945 copy of General Order Number 1 (document declassified on 20 August 1986),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5, vol. 6, pp.658-59.

11) 19 August 1945 copy of Washington's revision to General Order No. 1 (declassified on 21 August 1986),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FRUS는 이 문건을 다시 인쇄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어떤 양보를 했고, 어떤 순서로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관에게 항복하라.”¹²⁾

소련군은 1945년 8월 29일 에토로후/이투루프, 9월 1일 쿠나시리/쿠나쉬르를 점령했다. 1945년 9월 14일 하보마이와 시코탄도 점령했다. 그해 9월 20일 모스크바는 일방적으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포함하여 모든 쿠릴열도는 이제 소련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과정의 최종단계는 1947년 2월 25일 소비에트 헌법에 쿠릴열도는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연방(RSFSR)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로 편입된 것이다.¹³⁾

2) 1956년 소일 공동선언과 1960년 미일안보조약 그리고 그 이후

소련은 1951년 대일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 일본은 전쟁 종식과 소련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양측은 또한 평화조약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 제9조에서 양국은 외교관계 회복 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화조약 체결 후 소련은 하보마이 섬과 시코탄 섬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1960년 일본(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하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취소했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섬과 이투루프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를 계승했다.

1991년 이후 러시아와 일본 간에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화와 협상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러일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남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있다.

12) 23 August 1945 copy of Stalin's 22 August 1945 letter to Truman (declassified on 21 August 1986),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FRUS, 1945, vol. 6, pp.687-88; undated final version of General Order No. 1,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 FRUS는 이 문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탤릭체는 강조를 위해 저자가 첨부한 것이다.

13) Stephan, *Kuril Islands*, pp.166-70.

4. 알래스카 트라우마와 남 쿠릴열도

1867년 러시아 제국과 미국 간 알래스카 매매협약이 맺어질 때의 역사적 현실과 객관적 조건들은 오늘날 러시아의 언론과 애국문학들에서 러시아인들의 역사적 상상과 민족적 감정 분출로 나타났고, 이것은 상실한 영토에 대한 러시아 민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알래스카의 판매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트라우마)는 영토에 대한 집착을 야기할 것이며, 이것은 남 쿠릴열도 분쟁에서 외부적 상황이나 정세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든 결국은 어떤 영토의 양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민족주의 칼럼니스트인 세르게이 픽친(Sergei Pykhtyn)의 말을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알래스카 판매의 역사가 오늘날과 관련된 심각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고 확신한다. 그는 1990년 베링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배반한 러시아와 미국의 해양경계획정(demarcation)의 “반역”과 1867년 미국에 대한 알래스카의 판매라는 “반역”을 나란히 병렬하여, 1867년의 더 오래된 “반역”이 “미래의 토지 양여를 위한 문호를 열어 놓은 반애국적 몰락의 기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누구도 러시아의 아메리카 소유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유실되었는지 모르고, 과거와 현재 여론이 이 역사적 사실을 무관심하게 취급했다면, 러시아 인들은 우리의 미래의 영토 양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진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픽친의 언급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미로노프의 “피와 토양(blood and soil)”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미로노프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유전적으로 토지에 대한 유기적 접근방식을 물려받았다. “러시아인들의 땀과 피로 습득한 영토”¹⁴⁾는 상업적 매매나 정치적 협상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1956년 소·일간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또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과 러시아 간에 ‘2(하보마이,시코탄)+ α ’, ‘면적 2등분론’¹⁵⁾, ‘공동개발’ 등의 다양한 영토분쟁의 해결방안이 모색 중이다.

그러나 남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감정과 지금까지 나타난 정치적 결과, 즉 러시아 지도부의 행동을 볼 때, 남 쿠릴열도의 일본 양도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일본의 공격적인 경제지원 공약¹⁶⁾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분쟁해결의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메드베데

14) Иван Миронов, *Роковая сделка: как продавали Аляску*. (Москва, 2007) p.238.

15) “푸틴, 쿠릴 4개 섬 ‘면적 2등분론’ 언급” 「연합뉴스」, 2013년 4월 30일.

프 전 대통령은 쿠릴열도(쿠나시르)를 방문했고(2010.11.1.)¹⁷⁾, 푸틴 대통령은 쿠릴열도에 러시아 군(1개 사단) 배치를 선언했다(2017.2.23.)¹⁸⁾. 이러한 것들과 그 이후에 전개된 다양한 활동과 발언들은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영토적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결의의 과시라고 볼 수 있다.

5. 2020년 7월 러시아 헌법개정

1993년 엘친 헌법

2008년 개정 헌법(대통령 임기 4년에서 6년으로)

2020년 2차 개정 (푸틴) 헌법(41개 조항 개정, 5개 조항 신설)

* 7월 1일 국민투표

* 7월 4일 효력 발생

1) 2020년 개정 헌법 제79조(신설) “국제법(국제조약)보다 헌법이 우선”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2020년 개정 러시아 헌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된 제79조일 것이다.¹⁹⁾

“관련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은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러시아 연방 헌법 시스템의 기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국제기구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서

16) “日, 2조원가금으로 ‘쿠릴열도 반환’ 밀어붙이기, ‘4개섬 모두’ 요구 담보상태” 「문화일보」, 2013년 4월 29일.

17) “메드베데프 대통령, 쿠릴열도 전격 방문...日, 러와도 영토분쟁” 「국민일보」, 2010년 11월 1일.

18) “러시아, 쿠릴열도에 1개 사단 배치” 「한겨레」, 2017년 2월 23일.

19) Lauri Mälksoo, “International Law and the 2020 Amendments to the Russian Co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115, Issue 1, January 2021, pp.78-93.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article/international-law-and-the-2020-amendments-to-the-russian-constitution/89CE630A4E1AFD2F1EAD8DA47B3E0970>(검색일: 2021.5.31.)

시행되지 않는다.”²⁰⁾

이 새로운 규범은 1993년 옐친 헌법 제15조 4항(“국제조약(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을 특정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및 협정은 러시아 법률 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협정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규칙 이외의 다른 규칙을 설정하는 경우 국제조약(협정)의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2020년 개정 헌법은 헌법 자체와 러시아의 기타 국내법을 명확히 구분한다. 서로 다른 규범이 상충되는 경우, 국제조약은 헌법 아래 러시아 법률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헌법 자체는 “국제기구”가 해석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규범보다 높은 순위로 인정된다.

2) 2020년 개정 헌법 제67조(신설) “영토 분리(소외)는 위헌”

새로 삽입된 러시아 헌법 제67조 2항 1호는 러시아 연방이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영토의 일부를 분리(소외)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한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²¹⁾

20)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мож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ях и передавать им часть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если это не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ограничения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и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основам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тро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шени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принятые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ложени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их истолковании, противоречащем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 подлежат исполнению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duma.gov.ru/news/48045/>(검색일: 2021.5.31.)

21)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беспечивает защиту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Действ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делимитации, демаркации, редемарк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сопреде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тчуждение части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призывы к таким действиям не допускаются” <http://duma.gov.ru/news/48045/>(검색일: 2021.5.31.)

그러나, 이 조항에는 계속해서 허용되는 국가 영토의 경계 획정(delimitation, demarcation) 및 재획정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 22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러시아 연방의 영토적 통합성(무결성)을 위반하는 활동을 극단주의로 처벌하는 새로운 연방 법안을 채택했다.²²⁾ 또한 2020년 11월 18일 영토 소외에 대한 형사적 및 행정적 책임을 설정하는 추가 연방 법률이 채택되었다.²³⁾

6. 결론

한편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를 둘러싼 논쟁, 또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하여 알래스카 및 러시아의 헌법 개정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상황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어리석은 결정은 그것이 영토평기이든, 매매이든, 또는 다른 형태의 양보(공동개발)이든, 외교교섭의 의사표시이든, 그러한 결정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국익의 상실은 물론 민족적 감정에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래스카의 매매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적 통합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독도는 1954년 10월 28일 변영태 외무장관의 말²⁴⁾처럼 외교 교섭의 대상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2) Чем в России грозят призывы к отчуждению территории (What Threatens in Russia in the Case of Calls to Secession of Territory), State Duma News (Aug. 10, 2020), at <http://duma.gov.ru/news/49299>.

23) Приняты законы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отчужд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Laws Adopted on Responsibility for Alienating Territory), State Duma News (Nov. 18, 2020), at <http://duma.gov.ru/news/50048>.

24)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레다.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보전할 결의를 갖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센카쿠제도 전략

이 명 찬*

1. 서론

지금, 하나의 리포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5월 19일에 미 싱크탱크 “CSBA”가 발표한 “Dragon Against the Sun: Chinese Views of Japanese Sea power”이다. 집필한 상석 연구원인 요시하라는 중국 해군은 함대의 규모나 화력 등의 전력으로 해상자위대를 앞질러서 다음 위기에서는 억제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의 불균형은 미일 동맹을 긴장시켜, 아시아가 불안정화한다고 하며 미일 양국은 신속히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¹⁾

그 무서운 시나리오에는, ① 해상보안청이 센카쿠제도 주변에 침입하는 중국 공선을 총격하자 중국이 보복 공격, ② 중국의 항모가 미야코 해협을 통과, ③ 동중국해 상공을 경계하는 일본의 조기경계기와 전투기를 중국군이 격추, ④ 중국이 순항 미사일로 오키나와·나하 공항을 공격, ⑤ 미국이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기초한 협력 요청을 거부, ⑥ 미야코 해협의 서쪽에서 치명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 ⑦ 4일 이내에 중국이 센카쿠제도를 탈취—라는 내용이다.

사실, 센카쿠제도의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선은 어느 부근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지, 일본 국민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매스·미디어는 “중국의 해경선이 접속 수역에 들어갔다” “0시간 영해에 계속 침입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가까워져 경고했다”라고 보도해 왔다. 이런 보도로부터 국민의 다수는, 센카쿠제도 주변에 해상보안부의 순시선이 접속 수역이나 영해에 침입한 중국선을 쫓아내는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호의적

*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1) 고지마치 아야코(麹町 文子), “米国マル秘論文の衝撃「中国が沖縄爆撃。尖閣奪う」…迎え撃つ安倍の遺憾砲!” 『プレジデント Digital』 2020.8.26.

으로 받아들여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국유화 전후에 몇 번이나 어선으로 센카쿠제도에 상륙을 시도한 여배우이며 저널리스트인 가쓰라기 나미(葛城奈海)가 몇 년 전에 강연회에서 들려준 상황은 전혀 달랐다. 2021년 2월 25일 자 “산케이신문”의 칼럼 “직구 & 곡구”의 그 기사가 오늘의 상황을 말해준다. 중국이 해경법을 시행한 4일 후인 2월 5일 밤, 이시가키지마에서 출어한 2척의 어선(제1벚꽃 마루와 에미마루: 第1桜丸, 恵美丸)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말했다.

“우오츠리시마의 바로 옆에서 잘난 체하고 있는 중국 공선 ‘해경 1301’ ‘해경 2502’와, 거기에 대치하고자 하는 기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라는 놀랄 만한 눈에 익은 광경이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2012년 9월의 국유화 이후이다.

“국유화 이전에는 상륙만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손을 뻗으면 섬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어부들은 섬 눈앞에서 잠수 고기잡이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유화 이후에는 “1해리(1,852m) 이내의 접근” “을 해상보안부가 가로막아, 어부들도 들어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

2020년 11월 24일, 중국의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상이 방일하여 모테기 토시미츠 외상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모테기가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 측에게 전향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왕이는 “일부의 진상을 모르는 일본 어선이 다오위다오 주변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자국의 주권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의 스가 요시히데 수상과의 회담 후에도 왕이는 “위장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선박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회담 양일 모두 중국 해경국의 배가 센카쿠제도 주변의 접속 수역을 항행했다.

왕이의 “민감한 해역” 발언을 듣고 있는 일본 이외의 국민에게는 중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해역”에 타국의 어선이 국적을 위장하고 침입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요컨대, 일본의 어선보다 섬에 가까운 곳을 중국 공선이 선회하고 있지만, 순시선은 경고도 하지 않고, 하물며 쫓아내지도 않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왕이 외상이 “일부의 진상을 모르는 일본 어선” “위장 어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현장은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2. 미일 군사 전문가들의 센카쿠 방위 논의

미일 군사 전문가들의 센카쿠 방위 논의는 미일 사이에 현존하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²⁾ 개정의 급선무로 좁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 제7 함대의 전직 사령관이나 일본의 전 통합막료장 등 미일 군사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센카쿠 방위는 물론이고, 미일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태가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³⁾

이것은 5월 25일에 미 유력 군사 싱크탱크가 공표한 특별 보고서에 명기되었다. NBR(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가 5월 25일에 공표한 특별 보고서 “Murky Waters in the East China Sea: Chinese Gray-Zone Operations and U.S.-Japan Alliance Coordination”(동중국해의 불투명한 해역: 중국의 그레이존·오퍼레이션과 미일 동맹 조정)이 그것이다.

NBR은 2020년 7월 공표한 보고서⁴⁾에, 미일이 센카쿠 방위로 “미일통합기동전개부대”를 상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미일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의 현상 인식에 일치했다. 중국군이 실제로 센카쿠제도에 상륙하여 점령에 이르는 그레이존의 상황에 대해 중국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는가, 에 대한 위기감이었다.⁵⁾

중국이 왜, 지금, 이토록 센카쿠에 고집하는가. 보고서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어업권이나 천연자원과 같은 해양 권익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눈앞의 목적에 불과하다. 센카쿠제도는 지정학적으로 보아 동중국해에서 중요한 전략 거점이다”

“센카쿠를 획득하는 것으로 동중국해에서의 패권은 확실한 것이 된다. 센카쿠 탈취는 중국에게 본격적인 미일동맹에 대한 전략적 챌린지이다” “그 때문에 중국은 그레이존⁶⁾ 상황에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가네스(Kristen Gunness)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존·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2) 2015년 제정된 미일의 신가이드라인에 명기된 미일 간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

3) <https://www.nbr.org/publication/murky-waters-in-the-east-china-sea-chinese-gray-zone-operations-and-u-s-japan-alliance-cooperation/>

4) “미국, 드디어 센카쿠 방위에 적극 관여로”(JBpress 2020년 8월 5일부, <https://jbpress.ismedia.jp/article/-/61561>)

5) 高濱 賛, 「日米の尖閣防衛に不備あり、米シンクタンクが暴露」『JB press』2021.6.3.

6) 그레이존(회색지대)이란 센카쿠 유사에 이르는 직전까지의 불투명한 존 즉 “평시와 유사와의 Threshold(경계)”를 넘는 존을 가리킨다.

“중국은 해경국의 공선에 의한 센카쿠제도 바다의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능력(conventional capability)의 행사이다” “하지만, 그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이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기능과 같은 정보·하이테크를 사용한 비전통적인 능력(Unconventional capability)이다”

“중국은 센카쿠 유사를 흘리면서 정보 첨단기술로 미일의 모든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에 전략 지원 부대(Strategic Support Forces)를 창설하고, 통상 전력과 우주 전력, 사이버 전력을 결합시켜 (센카쿠를 초과한) 보다 큰 국익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존·오퍼레이션은 향후 한층 더 증강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퇴역 군인으로 전략 연구자인 헤민즈(John Hemmings), 터볼트(Wade Turvol) 두 사람은 미일의 그레이존·오퍼레이션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현행의 ACM는 확실히 유효하지만, 몇 개의 점에서 제약이 있다. 첫째로, 미일 사이에는 그레이존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어디서부터가 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인지, 어디로부터의 시작인지, 그 해석으로 미일 사이에는 어긋난 점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군사/준군사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ACM은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의 ACM에는 불명료함이 있다”

“센카쿠제도 주변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재, 가까스로 컨트롤하고 있지만, AMC의 혼란은 중국에 센카쿠를 탈취당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미일합동부대의 지휘 통제(C2) 통합사령부도 불가결하다. 주미일군의 재편성도 필요하다.”

사토 다카시(佐藤隆) 등 일본 측 군사 전문가들의 센카쿠제도 방위에 대한 인식도 미국 측과 다름이 없다.

“미일동맹에 기초한, 동중국해에 있는 각국의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계쟁은 내재하는 위험을 안고 있어, 하나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이 지역에서의 초석인 미일동맹을 변질시킬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 “센카쿠제도를 지킨다는 미국의 약속은 유사시에(중국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일본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약속이다”

“중국은, 미일안보조약 제5조를 센카쿠 방위에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온갖 그레이존·오퍼레이션을 행사하려고 한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과제는, 미일동맹이 이런 중국의 그레이존·오퍼레이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에는, 미일의 강고한 동맹관계는 일본이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그 영유를 견지

해 온 센카쿠제도를 탈취하는데 큰 장애물이다”“그런 만큼, 중국은 센카쿠를 둘러싸는 일중간의 계쟁을 지렛대로 하여 미일의 이반을 획책하고 있다.”

그럼 중국이 계획하는 그레이존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센카쿠제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는 해경국의 선박 등에 의한 “통상전력”뿐만이 아니다. 미국 측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하는 “비재래형 전력”을 흡수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대일 전략이다. 일본 측은 구체적으로 이하의 점을 열거하고 있다.

- 1, 정보 하이테크를 사용한 일본의 금융 시스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방해.
- 2, 전자 시스템을 사용한 일본의 인공위성이나 지상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방해.
- 3, 해저 케이블 시스템 파괴에 의한 일본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방해.

그 결과, 미일은 어떤 손상을 받는가.

“중국의 이런 파괴적 오퍼레이션은, 일본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력에 심한 손상을 주게 된다.”

센카쿠 유사 이전인 그레이존에서의 중국의 “대일 침략”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이 오키나와현·센카쿠제도에 무력 상륙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3. 센카쿠제도 방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

방위백서에는 “도서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1절이 설치되어, 탈환 작전을 일러스트를 넣어 기록하고 있다.⁷⁾ 정부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2020년 판 외교청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공선에 의한 영해 침입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그 횡수는 2019년의 1년간 32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

7) 長谷川 幸洋, “尖閣「侵攻」を企む習近平に、「日本の本気」を見せる凄まじい一手があった!”, 『ゼンダイ비지니스』 2021.4.9.

하여, 외교 루트를 통해 엄중한 항의와 퇴거 요구를 반복해 실시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간다>

<중국군의 함정·항공기에 의한 일본 주변 바다 공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센카쿠제도 주변의 일본의 접속 수역을 잠수함과 수상 함정이 항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중대한 염려를 표명하고 엄중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 항공기의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활발하며, 2012년 가을 이후, 항공자위대에 의한 중국 군기에 대한 긴급발진의 횟수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최근 중국군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외교 루트를 통해, 적절한 형태로 제기해 오고 있다>

현장에서 경비하고 있는 해상보안청의 대응은 어떤가. 백서에 상당하는 2019년 판 해상보안 리포트는 다음과 같다.⁸⁾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는, 2012년 9월 이후, 중국 공선이 거친 날씨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접속 수역을 항행하고 있어, 영해 침입하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중국 해경국이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에 편입되고 있어,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중국의 동향을 계속해 주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 해상보안청은, 영토·영해를 단호히 지켜낸다는 방침 하에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기초하여, 냉정하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카쿠제도의 현황 : 국민에게 센카쿠의 실태를 알리지 않는 일본 정부⁹⁾

이시가키시의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국 함선의 접근, 추적을 받는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다. 복수의 어업자 증언에 따르면, 해경국 함선은 2020년을 경계로, 센카쿠 주변에서 일본 어선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양이다. 통상, 해경국선 2척으로 일본 어선 1척을 협공하고 있다.¹⁰⁾

일본 어선에 대한 중국 공선의 위협 행위는 2012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 후부터 시작되었다. 단지 센카쿠 주변에 오랜 세월 어업 활동하고 있는 이시가키 시의회 의원인 나카마 히토시(仲間均:71)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중국 공선은 일본 어선을 멀리서 포위하

8) 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9/html/tokushu/toku19_01.html

9) 森 清勇, “尖閣諸島に領海侵犯する中国船がヤバイ事態に”, 『JB press』 2021.5.18.

10) “尖閣周辺 中国船2隻で挟み撃ち常態化 日本漁船「完全排除」へ”, 『八重山日報』 2021.4.14.

고 가까이 오지 않는 일도 있어서 행동은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이후, 나카마가 승선한 “쓰루마루”는 출어 때마다 해경국 함선으로부터 접근, 추적 등의 위협 행위를 받게 되었다. 다른 어업자도 해경국 함선의 조업 방해가 격화한 것은 “작년부터”라고 증언한다. 해경국 함선이 영해 외측에 있는 접속수역에서 항행한 날짜는 2020년, 과거 최다의 333일에 달해, 센카쿠 주변에의 “상주 체제”가 거의 구축되었다.

중국은 동년을 경계로, 센카쿠 주변에 자국의 존재를 과시하는 단계에서 일본 어선의 완전 배제를 목표로 하는 체제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국 함선에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해경법”도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매년 겨울에 미야코지마에서 센카쿠 주변에 출어한다는 이라부 어업 소속의 어업자, 구다 카 아키토(仲間均:60)= 미야코지마시 =에 따르면, 해경국 함선은 통상 4척으로, 2척씩의 팀을 짜, 각각 다른 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어선을 발견한 경우, 2척으로 어선 1척을 협공하며 추적한다. 올해 2월, 일본 어선 2척이 센카쿠 주변에 출어했을 때는, 해경국 함선 2팀이 다른 해역에서 어선 2척을 동시 추적하는 “연계 플레이”도 피로했다.

구다가 씨는 “중국은 일본 어선을 센카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효 지배를 빼앗을 생각일 것이다. 어부가 가지 않으면 “센카쿠는 중국의 것”이라는 기정사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려. “나도(센카쿠에)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센카쿠 주변에 어선이 출어할 때는 해상보안청이 어선 주변에 순시선을 배치하여 어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어선보다 섬에 가까운 곳을 중국 공선이 선회하고 있지만, 순시선은 경고도 하지 않고, 하물며 쫓아내지도 않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작년 방일한 중국의 왕이 외상은, 센카쿠 주변에 출어하는 일본 어선을 “위장 어선”이라고 불리, 출어시키지 않도록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외상의 발언 이전부터, 센카쿠 주변에 출어하는 어업자는 감소. 해경국 함선의 조업 방해가 격화하고 나서는, 오랜 세월 실시하고 있었던 출어를 취소하는 어업자도 나오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중국이 유리해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는 정세이다. 현장은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등대나 헬리포트와 같은 시설도 만들지 않고 정부 직원도 출입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시정권·관할권을 일절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가 치민 민간인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상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음 아닌 일본 정부가 그것을 말리는 상태이다.¹¹⁾

4. 센카쿠제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

센카쿠제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실효 지배 하에 있어, 영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그 자세는 일관하고 있다. 청나라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형적은 일절 없다.

메이지 18(1885)년 이후의 오키나와현의 재 3의 요청을 받아, 메이지 정부는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센카쿠제도가 타국의 지배가 이르지 않은 “무주지”인 것을 신중하게 조사 확인한 후, 메이지 28(1895)년에 국표의 건설, 오키나와현 관할을 각의 결정했다. 그 이후 전쟁 전까지, 센카쿠제도의 주민은 최대로 200명을 넘어, 정부의 허가하에 가다랑어포의 가공업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었다.

1920년에는, 중화민국 주 나가사키 영사는, 센카쿠제도에 표착한 중국 어민을 구조한 도민 등에 대해, 표착지가 오키나와의 일부인 것을 명기한 감사장을 보냈었다. 전후, 19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지만, 오키나와는 계속해서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여졌다.

1972년에 미국은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했지만, 그 반환 범위에는 센카쿠제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오키나와 반환에 앞서, 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그때까지 영유권을 주장한 적의 없었던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제도로의 영유의 주장을 시작했다.

중국은, 1992년에 갑자기 “영해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센카쿠제도를 중국령이라고 기재하고, 2008년 이후, 중국 해경국 함정의 파견과 영해 침입이 반복되게 되었다. 중국의 센카쿠제도에서의 “핵심적 이익”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체제의 수호”나 “경제 사회 발전의 유지”와 함께, “영역 주권”을 견고하게 수호해야 하는 “핵심적 이익”으로서 내걸고 있어, 영역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력의 행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방침을 취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만과 함께 센카쿠제도도, “핵심적 이익”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동년 7월, 일본 정부는 우오츠리시마 등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의

11) 西川 修一, “これで中国・習近平も青ざめる…連日の尖閣侵入に日本の「鬼の怒り」を見せる方法”, 『プレジデント Digital』 2020.8.3.

향을 표명해, 동년 9월에 우오츠리시마, 미나미고지마, 키타고지마 3섬의 구매를 정식 결정했다. 정부와 민간, 민간끼리의 센카쿠제도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그 이전에도 평온하게 행해져 왔으므로, 센카쿠제도의 현상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고 하는 주장은 오류이다.

“선점의 법리”에 의해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영토로

15세기 초에, 지금의 오키나와에 류큐 왕국이 성립한다. 류큐 왕국은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주변의 아시아제국과의 교역으로 번창했다. 유명한 오키나와의 쌀 소주 제조 기술도 당시의 삼(타이)에서 초래되었다. 증류기, 타이 쌀, 저장용 옹도 그렇다.

당시, 형식적이기는 해도 중국 황제가 가장 훌륭하고,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의 군주는 중국 황제로부터 임명된다는 관계였다. 이것을 책봉이라고 불렀다. 당연히, 류큐와 당시의 명 사이에서도 서로 왕래가 있었다. 그 항해의 도중에 있던 것이 센카쿠제도이다. 그 당시,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이다. 1884년, 고가 다쓰시로라는 일본인이 센카쿠제도에 상륙하여, 신천옹의 깃털의 채취,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을 영위하게 된다. 일본 정부도 센카쿠제도의 영유를 검토해, 오키나와현 등을 통해 몇 번이나 현지 조사를 했다. 이어서 1895(메이지 28)년, 센카쿠제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기 위한 각의 결정을 했다. 고가 씨도 정부의 허가를 받고 깃털의 채취를 사업화하였다. “고가 마을”이라고 불리게 되어, 가다랑어포 제조 등의 사업을 했으며, 전성기에는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의해 “선점(선언하지 않는다)”의 요건을 채우게 되었다. “선점”이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무주의 토지(무주지)에 대해, 다른 국가에 앞서고 지배를 미치는 것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하는 것이다. 선점의 법리라고도 말해져, 국제법에서 영토 취득의 본연의 자세로서 인정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센카쿠제도에 아무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영유에 반대했다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의 영유 선언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1919년, 중국의 어민이 센카쿠제도 부근에서 조난해, 피난한다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 센카쿠에 살고 있었던 일본의 주민이 중국 어민을 구조해, 중국에 돌려보낸다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비해, 다음 2020년에 나가사

키에 주재하는 중국 영사가 감사장을 보내고 있다. 이 감사장은, 돌담 시립 야에야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거기에는, 붓으로 새까맣게 “일본 제국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열도”라고 쓰여 있다. 중국이 센카쿠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1953년 1월 8일 자의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에서의 사람들의 싸움을 보도하면서, 그 안에서 “류큐 군도는, 우리나라 대만의 동북 및 일본 규슈섬 서남 사이의 해상에 산재하며, 센카쿠제도... 등 7개의 도서로 되어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발행된 지도에도, 센카쿠제도는 중국령 밖에 기재되어 있다.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해저 자원의 존재가 중국의 태도를 바꾸었다

센카쿠제도를 일본의 영토와 인정하고 있었던 중국이 태도를 표변시킨 것은 이 해역에 풍부한 해저 자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이다. 1968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현재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동중국해에 풍부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주변국이 눈빛을 바꾸게 되었다.

1970년에는 대만이, 1971년에는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1895년의 일본의 영유는 청일 전쟁(1894년~95년)과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어, 일본이 전쟁에 이기고 대만 등을 할양시킨 일환으로서의 행위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일본이 과거 전쟁의 불법성을 인정,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방기한 이상, 센카쿠제도의 영유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주장이었다.

대만 등의 할양을 결정한 시모노세키조약은 1895년 3월부터 체결 교섭이 개시되었지만, 센카쿠제도의 일본에의 편입 조치는 그 2개월 전인 1월에 선언되었다. 그런 만큼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대만의 할양은 결정되었지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 영국과 함께 발한 카이로 선언(1943년)이나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는 대만을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영토에 센카쿠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센카쿠제도는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가를 지급하는 대신에, 센카쿠제도를 사격장으로 써 사용하고 있었다. 점령하에도 센카쿠제도는 오키나와 일부로서 다루어져, 1972년에 오키

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센카쿠제도의 시정권은 일본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¹²⁾

5. 중국의 ‘해경법’ 제정에 나타난 해양 패권적 야망

2021년 1월 22일,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해경국에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포함한 권한의 확대를 인정하는 “해경법”을 가결·성립하여 2월 1일에 공포하였다. 중국 미디어는, “해경법의 목적은 국가 주권과 안전보장, 해양 권익을 지키는 것에 있다. 중국 해경국은 외국선으로부터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명기되었다. 해경 국원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외국선에 승선하여 검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해설하였다.¹³⁾

시진핑 정권은 “해경법”을 제정한 것으로,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 무장 역량과 국가의 법 집행 역량”이라고 자리매김하고, 단순한 연안경비대가 아니라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국제법에서는 영해 내이더라도 타국의 군함이나 공선에 대한 법 집행 권한은 제한되지만, “해경법”은 외국 군함이나 공선이 “관할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강제 퇴거·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관할 해역”의 범위에 대해서,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및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의 해역”이라는 광범위하고 애매한 표현이고, “관할 해역”의 섬이나 해상에 있는 구조물을 강제 철거하는 권한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국가 주권이나 관할권이 침해되면, 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조치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법의 집행이나 군사행동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워,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충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이번 “해경법”의 제정이, 향후, 센카쿠제도 문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일본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센카쿠제도 주변에의 해경국의 무력 행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하는 것이 많지만, 그 이상으로 문제인 것은 해경법은 국제적인 해

12) 松竹 伸幸, 『これならわかる日本の領土紛争』(大月書店, 2011/8/1)

13) 日本戦略研究フォーラム, “海警法で尖閣を狙う中国にクアッド構想で対抗せよ”, 『JB press』 2021.3.26.

양 질서를 정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실제 행동상에서 위반행위를 반복해 왔지만, 법률로 국제법 위반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국제 해양법 질서를 무시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해경법은 분명히 국제법 위반

구체적으로 해경법의 어느 부분이 유엔 해양법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가? 최대의 문제는, 중국의 주권이 이르는 해역의 범위를 유엔 해양법 조약보다 넓히고, 또한 중국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법에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관할 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법률상 이 “관할 해역”의 정의는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중국 최고 인민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의 사법 해석으로는 유엔 해양법 조약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정해져 있는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더해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의 해역”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후자의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의 해역”이라는 정의는 물론 불명확하지만, 아마 중국 정부가 자의적 또한 일방적으로 정한 해역이 그것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면, 남중국해의 구단선이나 센카쿠제도 주변의 해역도 그것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문제인 것은 그 “관할 해역”에서 외국의 공선에 대해서도 무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 타국의 공선(순시정 등)이 침입한 경우, 일반의 선박(어선 등)과 달리 주권의 행사(나포 등)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연안국은 그 해역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등하며, 또한 공선은 국가의 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경법에서는, “관할 해역”에서는 외국의 공선이라도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해경국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법에서는 그 밖에도, 중국이 마음대로 결정한 “관할 해역”에 타국이 건조물 등을 설치하였으면 해경은 그것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중국은 센카쿠제도의 우오츠리시마에 일본 청년사가 세운 등대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경법에는 그 밖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요점은, 중국은 이제부터 해경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제도, 남중국해에서는 난사제도·서사제도와,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해역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해상보안청은 자위대와의 공동 훈련도¹⁴⁾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선의 영해 침입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일본에서 “위기감”이 강해지는 것은 부득이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 위험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54년 제정한 자위대법 80조로 자위대가 방위 출동, 치안 출동하는 유사시에는 방위 대신이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도록 총리대신이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 48년에 제정된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는, “이 법률의 어떤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되거나 훈련받거나 군대의 기능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태어난 48년은 전후 3년, 헌법을 시행한 다음 해였다. 당시의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봉하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미군이 투하한 기계수뢰의 제거나 밀수의 저지, 밀항자에 의한 콜레라의 만연 방지 등에 해상 경비는 불가결했기 때문에, 소형이고 저속의 함정에 의한 해상보안청의 설립을 인정하고, 그것이 해군으로 발전되는 일이 없도록 이 조문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태도를 일변하여, 경찰 예비대를 신속히 만들게 하고, 그것이 54년에 육·해·공 자위대로 발전되었다. 미국의 연안경비대가 미 해군의 보조 부대인 것과 같이 유사시에는 해상보안청을 방위청 장관의 지휘하에 동원할 수 있는 조문을 자위대법에 넣은 것이다. 미군은 해상보안청에 중고의 3인치(76밀리) 포를 다수 공여해, 순시선을 무장시켰다.

이렇게, 해상보안청법과 자위대법에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헌법 9조와 자위대와의 부정합의 축소판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 생긴 해상보안청과, 후에 태어나고 급속히 확대한 해상자위대 사이에는 감정적인 대립도 발생했다.

하지만 근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는 중국 해군이나 해경국 함선의 행동으로 공동에 대처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나서 “화해”가 진전되었다. 지금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훈련을 하는 사이가 되어 “군대로서 훈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해상보안청법의 제25조는 반 사문이 된 감이 있다.

14) 田岡俊次, “中国「海警法」への過剰反応が、かえって武力衝突リスクを高める理由”, 『DIAMOND online』 2021.3.11.

6. 세계 최대의 해군력에 자신을 높여가는 중국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해경국”의 통합을 예상하고, 그 증강에 매진하여 배수량 1000톤 이상의 선박을 약 60척으로부터 130척 이상에 급증시켰다. 특히 1만 톤급의 대형 함선 등 신조선의 대부분은 헬리콥터의 발착이 가능하고, 76밀리 클래스의 함포 등 강력한 무기도 탑재하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에 의해 악천후라도 항행이 가능해져, 그 행동 범위는 비약적으로 향상했다. 지금은 “해경국”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대의 연안 경비 부대”가 되었다. 이 “해경국”의 해상 능력의 눈부신 향상으로, 중국 해군의 종합력은 한층 더 강화되어, 현재의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해군국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은, 2005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함정 총수량이 216척으로부터 333척으로 117척 늘어났다. 이에 비해 미국의 함정은 같은 기간, 281척으로부터 296척으로 15척의 증가에 머물렀다. 함정 수만이 군사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증강은 놀라울 뿐이다. 특히 항모 2척, 순양함 1척, 미사일 구축함 23척, 미사일 프리깃 함 30척, 전략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4척,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6척, 헬리콥터 강습 양륙함 1척, 상륙수송함 7척 등의 신조는 경이적이다.

이런 중국 해군의 확대·증강에 대해, 미 해군은,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다. 첫째, 미 해군이 태평양과 대서양의 2 방면으로 건너가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해군은 아시아 지역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둘째, 미 해군의 함정 수는 레이건 정권 시대(1980년대)의 약 500척으로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제약 상, 현재의 약 300척으로부터 한층 더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제3에 미 해군의 우위성의 근간인 항모 함대에 대해, 중국은 “항모 킬러”라고 말해지는 최신예의 대함 탄도미사일(동풍 21호)을 정비하고 있어, 이 위협으로 미 해군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방총성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대폭 증강 이전,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의 주요한 해양 파워로서의 전투력이나 억제력을 보관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중국에 확실히 뒤져, 그 능력 역전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전후의 중요한 권력의 이동이다”

“센카쿠제도 탈취라거나 동중국해의 패권 획득이라든가, 일본을 굴복시키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고, 군사력 행사에 대한 억제를 감소시켰다.”

“센카쿠 점령에서는 일본 측을 신속히 압도하여,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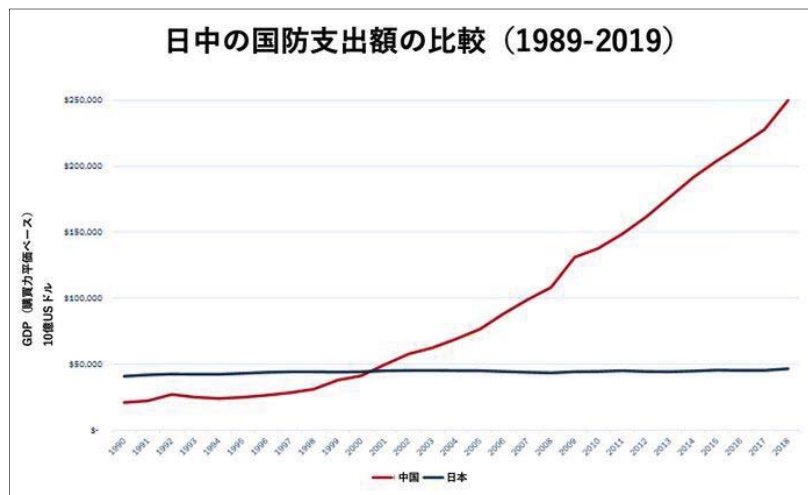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일본과의 전면 전쟁도 상정해, 그 경우에는 중국 측의 각종 미사일의 위협으로 일본의 방위를 붕괴시키는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미 절망적일 만큼 퍼진,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의 차이”¹⁵⁾

2020년은 팬데믹에만 주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는 이 해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질서의 전환점으로서 기록할 것이다. 2020년 5월, 동아시아의 군사 정세 연구의 권위자인 요시하라가, “과거 10년간, 중국 해군은 함대의 규모, 총 톤수, 화력 등에서 해상자위대를 능가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분석을 공표했다.

그 안에서, 요시하라는, “오늘의 중국 해군력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중국 해군에 대한 종래의 낙관적 가정은 이미 유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중국의 군사비는 일본의 5배나 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정치가나 군의 지도자는 자국의 군사적 우위에 자신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향후, 중국은 센카쿠제도 등 국지적인 분쟁에 있어서 공세적인 전략을 채용할 거라고 요시하라는 논했다. 요컨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지지해 온 군사 균형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中野剛志, “「尖閣」陥落は秒読み? とつくに「レッドゾーン」に突入している「日本の安全保障」 『DIAMOND online』 2020.12.8.

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인가. 조금 전의 그림을 보면 일목요연할 것이다. 중국은 이 20년간, 군사비를 급증시켜 왔지만, 일본의 방위비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이것으로는, 군사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다.

미국에 “지켜줄 수 있다” 시대는 임종을 맞이했다

다른 쪽으로,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이 10년간에 사라져버린 것에 있다. 10년 전 미국의 군사비는 중국의 5배였었다. 그것이, 지금은 3배 정도밖에 안 된다. “3배나 되지 않나?”라고 낙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자국 주변에 전력을 전개하기만 하면 되지만,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혹은 괌이나 오키나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지에 전력을 투사해야 한다. 이 지정학적 불리를 고려하면, 미중의 군사 균형은 이미 무너졌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미 의회의 자문에 의한 미 국방전략위원회의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교전 상태가 되면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2020년의 미 국방성의 연차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몇 개의 점에서 미국을 능가했다고 인정하며, 그 일례로서,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많은 전함 등을 가지는 세계 최대의 해군 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성급한 강경 자세 이유

왜 이 시기부터 중국은 실력 행사의 레벨을 올려 왔을까. 이것을 추측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에 중국에서 2개의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내부 조직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미중의 국제관계에 관계되는 것이다.¹⁶⁾

우선 중국 공산당의 내부 조직에 관한 것이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이라는 기념해야 하는 해이며, 또 제14차 5개년계획의 개시의 해가 된다. 그리고, 내년은 5년에 한번인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최된다. 즉, 시진핑 정권 2기째의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시진핑 주석은 장기 독재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정말이라면, 내년의 공산당 대회까지 군의 완전한 장악, 인민의 구심력 확보 등을 통해 독재의 정당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16) 鈴木 衛士, “日本をナメすぎた習近平…中国の尖閣諸島侵入、むしろ好機といえるワケ” 『ゼンダイ ビ즈니스』 2020.7.13.

것이다.

이런 중국의 국내 사정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중국이 비정상일 만큼 강경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중 마찰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랑외교”라는 말에 대표되듯이 중국 국내에서 고조되는 내셔널리즘에 대해, 대미 저자세가 아니라는 자세를 나타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는, 작년, 국제적인 약속이었던 1국 2 제도를 무너트리고 홍콩을 사실상 손에 넣은 것의 연장으로, 진심으로 센카쿠제도나 난사제도·서사제도, 또 대만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미중은 “새로운 전쟁”에 돌입했다

또 하나는, 중국을 둘러싸는 국제 환경이 2018년 이후 크게 변화했다. 전술과 같은, 동중국해에서의 센카쿠제도 주변의 활동과 때를 같이 하여,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경이적인 군사력의 증강을 배경으로 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는 현저해져 갔다.

즉, 미국 주도로 구축해 온 현재의 국제 질서를 일단 파괴하고, “동아시아에서 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중국의 목적”이 이미 명백해져, 미국은 드디어 중국에 대한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 이 중국에 대한 대결 자세를 명확히 선언한 것이 2018년 10월 4일에 워싱턴에서 1시간 미만에 걸쳐 행해진, 펜스 부통령에 의한(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선전포고”라고 말해졌다) 연설이다. 이 연설에 대해서는, 본지 2018년 10월 12일 부 “미 부통령의 연설은 실은 중국에 대한 “진정한 선전포고였다.”

이상처럼, 2018년을 경계로, 동아시아 등에서 패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과, 이것을 봉쇄하려고 하는 미국 사이에서, 외교나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나 정보 등 복합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것을 예측하였던 것처럼 무경이나 해경국 등의 조직을 개편하여 공세를 강하게 해 온 것이고, 이것이 센카쿠 주변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 붕괴에 의한 러시아 군사력의 저하와 교체, 중국군의 급격한 증강으로, 미중이 광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구도가 새롭게 완성되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중을 보면, 일본 열도(특히 난세이제도)와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도록 위치하고 있다. 즉, 일본의 독립이 지켜지고, 거기에 미국의 세력권에 있으므로, 중국군을 동중국해로의 이동을 억누를 수 있다. 즉, 중국군은 미국 본토(하와이를 포함한다)에 가까워질 수 없어, 미국 본토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해 온 중국군의 태평양 정면에서의 현재부터 근미래의 군사 전략은, A2/AD(접근 저지/영역 거부)라고 불린다. 제1 열도선인 일본의 규슈~난세이제도~대만~필리핀 등(남중국해의 둘러싸는 나라들)에서 미군의 침입을 저지하는 것, 제2 열도선인 이스 제도~오가사와라제도~괌~팔라우 선의 이서(안쪽)에서, 미군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멈추고 있어서 미국은 안심할 수 있다.

미국에서 보면,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는 전진기지(요새)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중국 위협의 전면에 처했다. 일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해, 필연적으로 미국을 지키게 된다.

7. 센카쿠제도와 미국

지금까지 미국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해,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태도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본의 주권이 이르는 영토인지에 대해, “특정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명확한 언급을 피해 왔다.

그런데 2월 23일, 미 국방총성 존·카비 보도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의 선박이 센카쿠 주변에 일본 영해로의 침범을 반복해서, 어선에 접근한 것의 질문이 나왔을 때, 카비 보도관은, “중국은 국제적인 규칙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센카쿠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센카쿠의 주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명확히 지지한다”라고 언명,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것은 큰 정책 전환일까 하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이 발언의 직후에, 미국의 국방총성은 웹 사이트에서 공표한 속기록 끝에 “센카쿠의 주권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변경은 없다”라고 설명문의 주석을 붙였다. 카비 보도관도 2월 26일의 회견에서 “나의 미스로 혼란을 일으켰다. 사죄하고 싶다”라고 진사, “미국의 종래의 정책에 변경은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¹⁷⁾

17) 筆坂 秀世, “尖閣諸島問題、米国の曖昧な態度も一因に”, 『JB press』 2021.3.23.

중국의 대두가 미일동맹을 쌍무적으로¹⁸⁾

미국의 조·바이덴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며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미일의 공통의 적인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한다는 인식으로 일치했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 “미일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제도에 적용된다” 것이 재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는 최전선인 센카쿠가 유사가 되면, 미국이 개입해 준다, 대만에는 미국이 현상 유지를 지지·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3월 16일에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의 공동 성명에는, “각료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촉한다”라고 하고 있다. 대만에 관한 기술은, 미국 측으로부터의 요청으로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후반의 “평화적 해결을 재촉한다”는 문언은 중국 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 측으로부터의 요청으로 더해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국 측의 일본에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¹⁹⁾

주목되는 것은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받은 중국 측의 대응이다.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의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을 지명하며 강하게 견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종속국”과 이례적인 형태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비판을 봐도, 일중 관계가 급속히 차가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중국은 민감에 반응하고 있다. 재미국 중국 대사관의 보도관은 17일에, 미일 공동 성명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명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해, 중국 외무성의 보도관은 대만 문제를 명기한 이 미일공동성명에 대해서, 미일에 “내정 간섭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항 조치를 강구할 생각을 시사했다.

18) 西村 金一, “尖閣諸島を死守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米国”, 『JB press』 2021.4.27.

19) 木内登英, “日米首脳会談を機に日本が強いられる「米中両にらみ」の綱渡り外交”, 『DIAMOND online』 2021年4月26日.

센카쿠제도가 대만과 대를 가지, 중국이 태평양에 나오기 위한 “다이몬”의 “빔장”이라는,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의 견해가 있다. 즉, 대만과 센카쿠제도는 태평양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요역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센카쿠제도 침략은 대만 침공과 반드시 연동하고 되게 된다. 그런 의미로는, 센카쿠 단독 침공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 연일 “센카쿠 침입”속에 내재한 일본을 함정²⁰⁾

센카쿠 주변 수역에서의 영해 내 접속 수역 내로의 중국선의 침입이 격증한 것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 이후이다(해상보안청 HP 참조). 물론 “국유화”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였지만, “국유화”와는 센카쿠제도 중 3섬(우오츠리시마·키타고지마·미나미고지마)의 민법상의 소유권을 민간인으로부터 국가로 옮긴 것을 가리킨다.

해상 민병은 일본에서는 “해상 민병을 태운 위장 어선이, 악천후 등에 편승하여 센카쿠에 표착하고 민병이 상륙.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선불리 손을 댈 수 없다는 딜레마를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함께 말해지는 것이 많다.

군이 출동하는 유사와 민간인과 경찰 권력이 대치하는 평시 사이의 “그레이존”이라는 의표 찌르기,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해상 민병이라고는 하지만 신분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인 이상, 먼저 손을 대면, “센카쿠 분쟁은 일본 측이 먼저, 민간인에 대해 공격해왔다”라고 말해질 수도 있다. 중국은 서서히 센카쿠에 가까워지면서, “일본 측이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009년의 시점에서, 미국의 해군 조사선 인팩카브르호에 대해, 중국 민병선이 공해 위의 항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이때 미국 측은 중국어선에 방수하고 이것을 치웠지만, 센카쿠 바다에서 도발적으로 돌아다니는 어선을 포함한 중국선에 일본 측이 “참고 견디는 도량의 끈이 끊어졌다”라며 만에 하나 강경 행동을 취해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 측이 의도하는 포인트라는 것이다.

20) 가지이 아야코(梶井 彩子), “全て習近平の思い通り…連日の「尖閣侵入」は日本を陥れる地獄の入り口だった…!”, 『プレジデント Digital』 2020.8.13.

이런 중국의 전략에 대항하려면, “중국 어선을 격침한다”라고 하는 단락적인 논조가 아니라, 중국 측을 넘는 논리를 구축하여 “그레이존”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끈질기게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쉬운 수법으로 센카쿠의 실효 지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 센카쿠나 동중국해와 같은 자국의 국익 만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널리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 중요해질 것이다. 홍콩 문제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관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쿼드 구상”으로 되돌아와, 주체성을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공헌하는 자세를, 행동도 따르는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나아가서는 센카쿠를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센카쿠 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신 정 화*

1.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분쟁은 모두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는, 이른바 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인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타이완이 사사군도와 난사군도를 놓고 영유권 주장을 벌이고 있다. 또 동중국해, 중국의 동쪽 바다(제주도 남부~타이완)에서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다.¹⁾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으며,²⁾ 일본, 대만, 중국과의 거리는 타이완(170km), 중국 대륙(330km), 오키나와 본도(410km)이며, 오키나와현(沖縄県) 이시가키시(石垣市) 이시가키시마(石垣島, 170km)와 타이완의 최북단 평지아섬((170km)과 동일 거리에 있다. 근대 이래 영토로서의 의미에 더해 센카쿠 열도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

*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전공

- 1)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며, 또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1992년 중국의 고지도에 표시된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으나,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동중국해의 경우는 역내 석유 매장 가능성, 중동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주요 해상로,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2)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沖縄県石垣市)에 속한 우오쓰리시마(魚釣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구바지마(久場島), 다이쇼도(大正島), 오키노키타이와(沖ノ北岩), 오키노미나미이와(沖ノ南岩), 도비세(飛瀬) 등으로 이루어진 여러 섬을 총칭한다. 이 중 가장 큰 섬인 우오쓰리시마는 오키나와 본도로부터는 225해리(410km), 중국 대륙으로부터는 180해리(330km), 타이완의 최북단인 평지아섬(彭佳嶼)으로부터는 90해리(170km) 떨어져 있다. 또 오키나와시 이시가키시마로부터는 90해리(170km), 일본 최서단에 위치해 국경의 섬으로 칭해지는 오키나와현에 속한 요나구니시마(与那国島)으로부터는 81해리(150km) 떨어져 있다.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index.html> (검색일: 2021.05.05)

효를 계기로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 그리고 일대에 매장된 해양자원(천연가스, 석유) 등 경제적 가치로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세력 확장을 꾀함에 따라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센카쿠 열도 분쟁의 주요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³⁾ 먼저, 중국은 다오위다오(센카쿠의 중국명)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영토’지만, 1895년 청일전쟁 때 패전한 이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할양하였다.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센카쿠열도를 이양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기본 입장을 전제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의 움직임을 시기별(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2010년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는 1945년~1980년대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센카쿠의 남서제도의 일부를 지배했다. 중국은 1971년 6월 중화민국정부 ‘정부성명’ 및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센카쿠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의 침범’이라고 비판했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의 영유권을 일본에 반환함에 따라 센카쿠 열도가 일본에게 귀환되었다. 일본과 중국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및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교섭에서 센카쿠 영유권 문제의 유보(다나아게, 棚上げ)에 동의했다. 센카쿠 영유권 문제보다 양국의 우호 관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⁴⁾ 발효에 앞선 1992년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중국 주권을 규정한 「영해법」을 제정했다. 1996년 일본과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다음 해인 1997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보류를 기본원칙으로 포함하는 「일중 신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세 번째 시기는 2000년대이다. 200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중 민간인 소유 3개 섬 임차했으며, 중국 민간단체는 2003년 ‘조어도보호연합회’ 결성하고 2004년 우오쓰리시마에 상륙(7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을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불법입국) 현행범으로 체

3) 손기섭, “일본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해양영토분쟁의 사례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0집 제2호(2017), p.99.

4)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과학적 조사 활동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해역, 즉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을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배타적 경제수역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444)

포 후 강제 퇴거함으로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간의 갈등을 조용히 관리했다. 그리고 2008년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일중 합의」에 서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2010년대로 센카쿠열도 중국 선박 충돌사건(이하 센카쿠열도 사건)과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중국의 어선과 해경선에 의한 센카쿠 주변 해역 활동이 증대되고 일본이 이의 제기를 행한다. 센카쿠 열도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형성된 것이다.

센카쿠 열도 관련 기존 국내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의 3개의 영유권 분쟁(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가운데 하나로 분석한 연구로, 최희식,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제3권 제2. 통권 제6호), 2013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사건을 계기로 변화하는 양국간 갈등 분석한 연구로,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과 동북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53집 1호), 2013 및 신정화, “일본의 센카쿠열도 정책의 내용과 변화: 현상 유지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연구논총』(46권0호), 2017 등이 있다. 셋째, 센카쿠 분쟁의 주요 원인과 조진구, “동아시아에서의 중일 간의 새로운 파워게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no. 77), 2010 등이 있다. 넷째, 센카쿠 열도 중국어선 충돌 사건 이후 변화하는 일본의 대중 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이상현,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법적 기반 정비와 해상안보 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52권 0호), 20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물을 토대로, 본 논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센카쿠 열도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센카쿠 열도 사건 이후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해양 공세를 일본은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센카쿠 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 인식의 변화

1) 중국의 경제·군사력 상승과 ‘잠재적 위협’ 중국

1978년 일중국교정상화가 상징하는 정치적 화해 후, 일본은 중국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⁵⁾ 그리고 중국의 급속하게 경제를 성장시켰다.

한편, 일본에서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세계 공장화’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내에서는 중국산 저가상품이 일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켜 일본의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는, 경제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⁶⁾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진자 참배를 계기로 발생한 중국의 반일 데모였다. 폭력을 수반하면서 확대되는 중국의 반일민족주의를 접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⁷⁾ 2007년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반중감정을 반영하는 형태로 1980년 이후 30년 가까이 중국에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 원조(ODA)의 신규 지급을 위한 계약을 중단했다.⁸⁾ 그리고 2010년 중국의 명목 GDP가 1조 3,369억 달러로 일본의 명목 GDP 1조 2,883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근대 이후 100년 이상 유지되어왔던 일본 우위의 경제 관계가 중국 우위로 전환된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이 국방비를 급증시킨 결과 일본과 중국의 국방비도 역전되었다. 2010년, 일본의 국방비가 514억 달러였으나, 중국의 국방비는 1,143억 달러였다. 중국이 일본보다 약 2배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⁹⁾ 물론 국방비의 액수가 바로 군사력의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제약에 의해, 또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국방비의 확대가 어려운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국방비 증대는 우려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국은 근대화된 해군력을 배경으로 센카쿠열도 근처 해양에서의 활동을 증대시

5) 徐承元, 『日本の経済外交と中国』 慶応義塾大学出版社、2004. pp.51-53.

6) 신정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통합균형 억지전략,”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편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백산서당, 2012. p.152.

7) 国文良成編, 『中国は、いま』 岩波新書1297、株式会社岩波書店、2011. 및 毛里和子, 『日中漂流—グローバル・パワーはどこへ向かうか』 岩波新書1658、株式会社岩波書店、2017. pp.45-60.

8) 실제로 일본이 대중ODA를 중단하는 것은 2018년이다. 1979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간 일본은 중국에 대해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으로 구성되는 ODA를 합 3조 6,500억 엔 제공했다.

9) 일본과 중국의 국방비 총액을 비교하면 1989년에는 일본 383억 달러, 중국 123억 달러로 약 3배의 차이가 있었으나, 10년 후인 1999년에는 일본 434억 달러, 중국 216억 달러로 약 2배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2004년 일본 444억 달러, 중국 403억 달러를 마지막으로 양국의 국방비는 역전되었다. Th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IPRI, 각 년도 통계를 토대로 작성.

켰다.¹⁰⁾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이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沖縄)와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의 센카쿠열도(이즈섬들(伊豆諸島)과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들)을 침범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함대의 해역 통과는 “공해상에서의 항해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¹¹⁾ 결국 「2004년 방위대강」을 시작으로 일본은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해군력의 증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¹²⁾ 중국이 경제적 차원의 ‘위협’을 넘어, 군사적 차원의 ‘위협’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과 ‘실질적 위협’ 중국

중국어선의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를 받아 순시선 2척에 충돌하는 사건, 이른바 센카쿠열도 사건이 발생했다.

해상보안청은 동 어선의 선장을 포함한 12명의 선원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나하 지검(与那地検)에 송치했다. 그러나 선장을 체포한 해상보안청은 체포 이후의 처리 절차를 알지 못했다. 또 민주당 정부도 체포 이후의 검찰송치와 사법절차는 물론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¹³⁾ 뿐만 아니라, 중국 선장과 선원 체포가 1997년 11월에 체결된 「중일 신어업협정」의 기본원칙인 영유권 문제보류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었다.

자국 선장 체포를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행사로 받아들인 중국 정부는 센카쿠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선장에 대한 일본의 사법처리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보복 조치로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정지하고, 일본인 종합상사 직원 4명을 연금시켰다.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 외교적 공방을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보복을 가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나하 지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 및 일중 관계를

10)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위성 파괴실험, 2008년 10월과 11월 중국의 신형구축함, 2010년 키로급 잠수함과 소브레멘누이급 구축함 등 10척 그리고 류조우급 구축함 등 2척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해역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 등이 있다.

11) 日本防衛省 防衛研究所, 「中国安全保障レポート」(2011.3), p.13.

12) 日本防衛省, 「平成17年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2004.12.), <http://www.mod.go.jp>.

13) 日本再建イニシアティブ著, 『現代日本の地政学：13のリスクと地政学の時代』中公親書2450, 2013, p. 145.

고려해” 중국인 선장을 처분보류로 석방했다. 다음날 선장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센카쿠열도 사건은 일본이 중국에게 굴복한 형태로 일단락된 것이다.

2년 뒤인 2012년 9월 민주당 정부는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했다. 이것은 노다 수상의 영토 문제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 더해 영토 내셔널리즘을 이용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경 도지사 이시하리 신타로(石原慎太郎)를 비롯한 보수우파정치가들, 그리고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해 강한 태도를 요구하는 여론의 합작품이었다.¹⁴⁾ 그러나 이것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약 30년 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조용한 관리를 통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 유지라는 현상관리정책에서의 일탈이었다.¹⁵⁾

이에 앞선 동년 5월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타이완, 티벳 등과 함께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타국의 어떠한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중국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받아들였다. 중국 외교부는 국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센카쿠열도와 부근 도서에 영해기선을 공포하고, 주변을 자국 영해로 한 대륙붕 연장을 유엔에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어선과 해경선의 활동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해상경비청의 대응이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되어 간다.¹⁶⁾

결과적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의도 유무와는 관련 없이, 2010년 중국인 선장 체포사건은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관할을 (중국이) 용인한다”는 1972년 국교정상화이후 유지되어 왔던 암묵적 합의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했다.¹⁷⁾ 더 나아가,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는 중국에게 “여기에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했다. 이 결과,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본격적인 분쟁지역으로 부상했다.

센카쿠열도 사건은 일본이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 2010년 10월 간 나오토(菅 直人) 수상은 국회 표명 연설에서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

14)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3개 섬 국유화 과정에 대해서는 신정화, 앞의 논문 III장 및 이정환, “이시하라 신타로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통권 15호), 2018.01를 참조할 것.

15) 신정화, 앞의 논문, p.115.

16) 海上保安庁, “尖閣諸島周辺地域における中国公船などの同行とわが国の対処”(https://www.kaiho.mlit.go.jp/mission/senkaku.html)

17) 孫崎亨, 『日本の国境問題——尖閣・竹島・北方領土』ちくま新書, 2011, p.35.

력 강화와 인도양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양 활동의 활성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발표된 「2012년 이후에 관계하는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2011년 방위대강」으로 칭)은 역지에 중점을 두었던 ‘기본적 방위구상’을 ‘위협 대응형 방위정책’인 ‘동적 방위력’ 구축으로 변경했다.¹⁸⁾ 중국이 해공역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자위대의 기동 전개 능력 강화, 정보수집, 경계 감시, 그리고 정찰 활동 강화를 통해 대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제1도련선에 속하는 큐슈와 오키나와의 육상자위대가 증대되었다. 또 중국과 갈등 지역인 난세이제도에 대한 경계 감시, 해양 소계, 방공, 탄도미사일 대처, 운송, 지휘통신 등의 기능 정비와 구비를 위해 방위예산이 대폭 배정되었다.¹⁹⁾ 저성장경제로 인해 국방비 증액이 어려운 조건에서, 또 2010년 이후 중국과의 국방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의 고육지책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미국에 대해 관여를 요청했다.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관할권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단독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995년 5월 미국 국무부가 표명한 것처럼,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peace and stability),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분쟁에 있어서 중립성, UN해양법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사건시, 영토 분쟁 자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센카쿠열도가 미일방위조약 대상에 적용된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2달 뒤인 11월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미 7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미일 간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다음 해 2011년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진격 저지를 목적으로 한 미일 합동 CPX(각급 부대의 지휘소 요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지휘소의 작전 연습) 훈련이 이루어졌다.²⁰⁾ 또 2014년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²¹⁾

18) 日本防衛省, “平成23年以降に関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1.12). (<https://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0/1217boueitaikou.pdf>)

19) 日本防衛省, “わ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23年度予算の概要”(2012.02)(https://www.data.go.jp/data/data-set/mod_20140905_0023/resource/a6939d57-cdb6-4484-a5cb-fcb506d3fb36)

20) 박광섭·김강년,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67) 2013.6, p.290.

이것은 미국이 센카쿠열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로 새롭게 참여했음을 의미했다.²²⁾ 센카쿠 열도 문제가 일중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 간의 동중국해 제해권 문제로 변경되기 시작한 것이다.

3.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1) 지정학적 접근 : 해양 국가 vs. 대륙 국가

2006년 9월 26일 제1차 내각 출범시 국회(제165회)에서 행한 ‘총리대신 소신 표명 연설’에서의 아베의 대중 인식과 외교정책 관련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²³⁾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양국과의 신뢰 관계 강화는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2013년 1월 28일 제2차 내각 출범시 국회(183회)에서 행한 ‘총리대신 소신 표명 연설’에서 아베의 대중 인식과 외교정책 관련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²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영해·영공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 외교·안전보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 ... 무엇보다도 기축인 일미 동맹을 일층 강화해 미국과의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 지구의를 바라보듯 세계 전체를 부감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에 입각해 전략적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21) Mark E. Manyin(2016) The Senkakus (Diaoyu/Diaoyutai) Dispute: U.S. Treaty Oblig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7

22) 윤석정,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 평가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0-17. p.7.

23) 「平成25年1月28日 第百八十三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128syosin.html)

24) 「第183回国会における所信表明演説」(平成25年1月28日) https://www.kantei.go.jp/jp/96_abe/actions/201301/28shoshin.html

이처럼 2006년 제1차 내각과 2013년 제2차 내각에서의 아베 수상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 먼저, 중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국에서 위협국(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은 신뢰 관계 강화에서 가치 외교를 통한 중국 억지로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2010년 이후 확대되어 가는 일중 간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후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은 중국 억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화의 진척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지정학적 관점을 소환했다는 사실이다.²⁵⁾

아베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동 지역은 이질적인 해양 국가 그룹과 대륙 국가 그룹 간의 기본적인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대표적인 대륙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며 이들 국가는 공산당 일당 지배 또는 강권적·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이다. 러시아는 물론 특히 중국의 경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의 진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이다. 이에 대해, 해양 국가는 기본적으로 일본, 미국, 호주이며, 대륙과 3면에 걸쳐 해양 연선지역을 가지는 양생 국가인 인도도 포함된다. 이들 4 국가는 모두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에 위협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 ‘공통의 가치’ 아래 협력 연대 체제, 이른바 가치동맹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단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대국 역학 관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중국 국경 역학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관점에 입각해 아베 정권은 해양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2013년 전후 최초로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의 국가정체성으로 첫째, 강한 경제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제 대국, 둘째,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온 평화 국가, 그리고 셋째, 해상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해양 국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사실, 일본은 국토보다는 해양에서 광범위한 권리를 보유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동의 페르시아만, 아데만에서 인도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를 걸쳐 일본 근해로 이어지는 광대한 해역의 해상 교통로(sea-lane)가 일본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

25) 細谷雄一、『安保論争』、ちくま親書1199、pp.94-96.

26)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編、앞의 책, pp.29-30.

27)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2013.06) (<https://www.cas.go.jp/jp/siryoku/131217anzenhoshou/nss-j.pdf>)

며, 또 해양 수송로의 안전 확보야말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를 겸비한 양생 대국이 되기 위해서 해양으로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해양 국가들의 위협이다.

한편,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초 국방전략으로 ‘도련선(島鏈線, Islands Chain)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중국 해군의 방어선인 도련선은 태평양의 섬(島)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목표는 도련선 밖으로 미군 전력을 축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말레이시아로 이어지며, 목표 달성 시기는 2020년경이다. 제2도련선은 일본~사이판~괌~인도네시아로 이어지며, 목표 달성 시기는 2050년경이다. 이를 위한 전략은 접근금지(Anti-Access, A2)와 영역거부(Area Denial, AD)이다.

특히, 제1도련선은 외래세력을 막는 ‘방벽’인 동시에, 태평양으로의 진출시 ‘장벽’이다. 따라서 중국은 해양 국가로서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1도련선 안의 해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²⁸⁾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중화체제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해양, 즉 중국해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1978년 개혁·개방이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3대 경제권 즉 창장(长江)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이 서해(황해), 환발해(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지역이 동중국해, 주장(珠江)삼각주(광둥)이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시진핑 시대가 시작된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회보고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 경제 발전,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강국 건설 등 해양과 관련한 언급들을 대폭 강화하고, 해·공군력과 같은 전력 증강에 의해 해양에서의 권익을 확고히 추구한다고 천명하였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1도련선과 1950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인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거의 중복된다. 또 제1·2도련선에는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이즈섬들과 오가사와라섬들), 오키나와, 류슈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류슈(九州)지방에 위치하는 가고시마현(鹿児島県)부터 국경의 섬이라고 불리는 요나구니섬(与那国島)에 이르는 제1도련선의 일부는 일본의 주요 안보 지역과 겹치고 있다.

28)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編、『中国の海洋侵出を押さえ込む：日本の対中防衛戦略』, 国書刊行会, 2017, pp. 8-9.



출처: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한국해양안보포럼, http://komsf.or.kr/bbs/board.php?bo_table=m44&wr_id=9

〈그림 1〉 중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아베 내각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세력권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동중국해에 떠 있는 ‘고도(孤島)’라고 인식한다. 중국의 어선과 해경선이 완전히 평시도 전시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분쟁, 즉 회색지대 전략을 상시화하는 것은 일본의 실효 지배를 약화시켜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살라미작전이라고 받아들인다.²⁹⁾ 그리고 만약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동중국해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중국이 장악하게 되어 일본의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판단한다.³⁰⁾

더 나아가, 중국의 해공군의 능력이 동중국해의 제1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의 제2도련선까지 확대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역,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국의 억지능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 향상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이 일본의 주요 도시·시설 및 재일미군 기지, 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미군 부대 및 함정에 대한 공격 능력을 높여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³¹⁾ 따라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

29) 일본 특유의 개념인 ‘회색지대사태’란 영토 및 주권, 경제권익을 둘러싸고 완전히 평시도 전시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현, 앞의 논문, p.103.

30) 細谷雄一、앞의 책, pp.140-141.

31) 東京財団政策研究部、『政策で提言: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多層強調的安全保障戦略—』(2008.10), p.6.

해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은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대중 방위전략의 기본 개념은 크게 첫째, 억지전략, 둘째, 제한전쟁전략, 그리고 셋째, 공동방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이 중 첫째의 억지전략과 둘째의 제한전쟁전략은 일본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중일 양국의 경제력과 국방비의 차이 그리고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실제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본이 보다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셋째의 공동방위전략이다.

첫 번째의 억지전략은 상대로부터 공격이 행해지면 본격적으로 반격을 행한다는 의지를 상대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군사력의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국제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일본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일국 평화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을 행해야 한다. 아베 수상이 2013년 2월 미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일본은 돌아왔다'(Japan is back)라는 연설을 통해 강한 일본 재건을 선언한 것은 대외차원의 억지전략 표명이었다.³³⁾ 그리고 동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구성하고, 전후 최초로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힘에 의한 외교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제시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억지전략 표명이었다.³⁴⁾

두 번째의 제한전쟁전략이다. 이것은 핵 위협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억지정책에 의존하나, 그 이외의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이 통상전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전략 및 방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이후 정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사 사태를 대비해 일본의 능력과 역할의 강화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10년 11월에 발표된 「2011년 방위대강」은 억지에 중점을 두었던 자위대의 '기반적 방위구상'을 '위협 대응형 방위정책'인 '동적 방위력' 구축으로 변경했다.³⁵⁾ 그리고 2016년 3월

32)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編、 앞의 책, pp.11-12.

33) 日本国内閣総理大臣 安倍晋三, “日本は戻ってきました,” 平成25年2月22日 / 米ワシントンDC, CSI(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5/abe_us_0222.html)

34)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2013.06)

35) 日本防衛省, “平成23年以降に関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1.12). (<https://www.kantei.go.jp/jp/>)

부터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일련의 안보 관련 법률)에 의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남중국해까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2018년 12월에 발표된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아베 수상의 공식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실질적으로 수정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가능해졌다.³⁶⁾ 그리고 방위대강에 의거하여 마련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2019~2023년)」은 기본방침으로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목표로 방위력을 강화하되, 인구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의 효율적·중점적 배분 및 자위대의 통합 운영 가속화를 제시했다.³⁷⁾

구체적으로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략적 해상보안 안보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해상력 강화와 해상보안체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해상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에서의 영역 경비를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의 역량 강화, 해양 정보수집 체제 강화를 위한 해양상황파악(MDA)체제 수립, 그리고 원거리 도서지역 경비 강화를 위한 부대편성 등이 이루어졌다.³⁸⁾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대중전략과 관련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셋 번째 공동방위 전략이다. 공동방위전략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호주,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력·연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일본은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 발생후 센카쿠열도 갈등 구도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왔다. 앞의 2장 2절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센카쿠열도가 미일방위조약 대상에 적용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며, 2015년 4월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항해의 자유를 비롯하여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규정했다.³⁹⁾

kakugikettei/2010/1217boueitaikou.pdf)

36) 이와 관련하여, 2020년대 후반에 대형 호위함 ‘이즈모’와 ‘카가’에 최신 스텔스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항모화’ 그리고 도서(島嶼) 방위용으로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15 전투기에 최대 사거리 900km가 넘는 미사일을, F35A에는 500km가 넘는 미사일 보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전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탄’의 독자적 개발이 주목되고 있다.

37)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31年度~平成35年度について)」(平成30年 12月 18日)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

38)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현, 앞의 논문, pp.114-118 참조.

39)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이 일본의 주변 지역을 방위하고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위해 공동작전

다음으로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대중연대는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고 열린’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에는 아베 내각의 지정학적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중국해가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양은 남중국해의 서쪽 방벽(防壁)을, 태평양은 동중국해의 동쪽 방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의 진출을 각 지역별로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과 태평양 양쪽에서 동시에 억지하겠다는 대중 포위·고립전략인 것이다.



출처: 外務省国際協力局, “平成29年度開発協力重点方針,” (<https://www.mofa.go.jp/files/000245509.pdf>)

〈그림 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존재하는 호주, 인도, ASEAN 국가들과 국방교류 및 협력에 힘을 기울이는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주도했다.⁴⁰⁾ 그리고 2017년 11월

을 실시할 것이며,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일본에 대한 육상공격을 공동 작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防衛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https://www.mod.go.jp/j/approach/anpo/shishin/>)

40) 2012년 아베 수상은 ‘아시아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구상에서 일본의 역할을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괄하는 대중 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Abe, Shinzo,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이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대체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의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의존관계로 인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 냉전기의 대소련 봉쇄정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풍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일본이 맞서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 아베의 방중이 상징하듯이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경제적 관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⁴¹⁾ 이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전략을 떼어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대중 역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장서는 형태로 대중 역지를 강조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⁴²⁾

4. 마무리글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은 일본의 대중 정책의 전환점이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일본과 동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기존의 전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의 명목 GDP와 국방비의 역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전의 폭은 확대되어갔다.

우선, 일본은 센카쿠열도 정책을 변경했다.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41) 2018년 10월 26일 일중정상회담(아베 수상, 리거창 총리/ 아베 수상, 시진핑 국가 주석), 2019년 6월 27일 일중정상회담(아베 수상,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문제의식을 전달했으며, 2019년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삼기 위한 외교·안전보장 분야 대화 강화가 합의되었다.

42) 조은일, “아베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제2호(통권 109호), 2020년 여름, p.86, 및 pp.98-99.

관할을 (중국이) 용인한다”는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이후 유지되어 온 암묵적 합의에 기초한 기존의 현상유지정책을 전략적 대응정책으로 전환하고 미국을 개입시켰다. 이로써 센카쿠열도 문제는 중일간 영유권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 대 중국 간의 제해권 문제로 전환된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세계 공장화’가 일본경제의 위협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확대되었다. 또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이후에도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해양에서의 움직임은 군사적 차원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기존 대중인식을 ‘실질적 위협’으로 전환시켰다. 중국의 해양으로의 세력 확장이 일본의 안녕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위협’ 중국이라는 인식에 입각해 일본의 대중정책은 재편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고 싶지 않았다. 2018년 일본 정부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40여 년간 공여해 온 개발도상국 대상 원조(ODA)를 중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을 일본이 제어할 수는 없었다.

중국 억지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전략 강구되었다. 일본의 역대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일동맹을 강화했으며, 일본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그러나 확대되는 중국과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평화헌법 틀 안에서 일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2013년 1월 발족한 제2차 아베 내각이 중시한 것이 다른 아닌 지정학이다. 아베 내각은 강대한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해양 국가까지를 겸비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양생 국가를 추구한다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의 작전영역으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설정하고 중국해(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차원이 아니라, 중국해의 서쪽인 인도양과 동쪽인 태평양 양쪽의 해양 국가들이 가치관 외교로 연합해야만 한다. 바로, 아베 내각의 대중 공동 방위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운용을 위해 아베 내각은 미국은 물론 인도, 호주 그리고 ASEAN 국가들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 속에서 ‘대중봉쇄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선두에 서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중 억지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으로 변화되어 갔다.

일본 아시아주의 속의 독도의 위상과 전략

이 기 완*

1. 서론

도쿄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자체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해진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심화된 양국 간 갈등을 한층 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근래에 들어 이러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으로부터 시작하여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외무성의 『외교청서』·방위성의 『방위백서』 등을 통한 독도의 일본 영토 기술회, 지방자치단체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11년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그 방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¹⁾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한국은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작은 섬에 불과한 독도’에 대해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1) 이기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의도,” 『평화연구』 제20권 1호(2012), p.149.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태정관지령에 의해서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05년 2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던 것은 한반도와 독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즉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의 중앙에 위치한 독도는 대륙이나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동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²⁾ 이러한 사실은 1905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전멸시킨 쓰시마해전에서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 서구 세력의 동양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개국을 강요받았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여 후발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의 중국 중심의 국제체제를 ‘일본 중심의 국제체제’로 바꾸어 일본 중심의 패권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아시아주의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익선’을 확보하고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입각한 팽창주의 노선 하에서 강제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즉 일본은 당시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한 아시아주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화’ 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아시아주의에 입각한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이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강제 편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아시아주의의 팽창주의적 노선을 추진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독도 뿐만 아니라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의 편입 과정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의 해양 정책은 대륙진출을 위한 해양 교두보 확보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었으며, 이것이 독도의 시마네현 부속도서로서의 강제 편입에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2) 김태준, “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서대구 JC (편), 『독도가 한국을 살린다』(서울: 백산서당, 2004), p.244.

2. 연구 동향과 분석틀

1) 독도에 대한 연구 동향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 양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다수의 논문과 서적이 발표되었고,³⁾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측 주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김영구,⁴⁾ 김영수,⁵⁾ 김학준,⁶⁾ 김화경,⁷⁾ 송휘영,⁸⁾ 유미리,⁹⁾ 윤소영,¹⁰⁾ 호사가 유지,¹¹⁾ 현대송¹²⁾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료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고문헌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 측의 고문헌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게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사료적 관점에서 볼 때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 우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부속도서로의 편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김채형,¹³⁾ 김호춘,¹⁴⁾ 이기완,¹⁵⁾ 이석우,¹⁶⁾ 이장희¹⁷⁾, 이창위,¹⁸⁾ 이한기,¹⁹⁾ 정병

-
- 3) 이성환,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2권(2002), pp.381-402.
 - 4) 김영구, 『독도문제의 진실』(서울: 법영사, 2003).
 - 5) 김영수,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제17권(2009), pp.233-268.
 - 6)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서울: 해맞이, 1996).
 - 7) 김화경, “일본의 독도 영유권 위증에 관한 연구,” 『일본학연구』 제36집(2012), pp.49-72.
 - 8) 송휘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제106권(2012), pp.241-271.
 - 9) 유미리, “‘우산도=독도’설 입증에 위한 논고,”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9집(2008), pp.73-102.
 - 10) 윤소영,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권(2012), pp.5-43.
 - 11) 호사가 유지,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서울: 자음과 모음, 2005).
 - 12) 현대송,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쟁점,” 현대송(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경기: 나남, 2008).
 - 13) 김채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2007).
 - 14) 김호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선점 주장의 문제점,” 『전략논단』 제15권(2012), pp.163-183.
 - 15) 이기완,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 이기완(외), 『동맹과 영토분쟁』(창원: 성연, 2013).

준,²⁰⁾ 최완,²¹⁾ 최장근,²²⁾ 호사카 유지²³⁾ 등에 의한 국제정치적 분석(전후 처리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 내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대일정책의 변화, 미국의 일본 편들기, 일본의 치밀한 공작정치, 그리고 한국 외교의 서투름 등이 독도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대립구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대중·대소봉쇄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독도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기완²⁴⁾에 의한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와 관련된 정치 동학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이기완은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신보수주의 세력의 활성화와 사회당의 몰락에 의해 초래된 정치지형의 변화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아베 신조로 대변되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결여한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정당체계가 총보수화 되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면에는 민족주의적 흐름의 강화라는 사회 현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2) 분석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분석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독도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

-
- 16)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1호(2002); 이석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법』(파주: 집문당, 2007).
- 17) 이장희,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대응방안,”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2005), pp.141-149.
- 18) 이창위,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정책,” 『사회과학논문집』 26호(1997), pp.21-42; 이창위, “일본의 도서 분쟁과 관련 지명 및 범위에 대한 갈등,” 『법조』 제61권(2012), pp.78-112.
- 19)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 20) 정병준, “윌리엄 시볼드와 독도 분쟁의 시발,” 『역사비평』(2007).
- 21) 최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가 누락된 요인은 무엇인가?,”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8권(2012), pp.1-16.
- 22) 최장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조항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제21호(2004); 최장근, “독도의 지위와 영토 내셔널리즘과의 관계,” 『일어일문학』 제50권(2011), pp.387-405.
- 23) 호사카 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본질적 대응,” 『시대의 논리』 제6호(2004).
- 24) 이기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한일관계,”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2006), pp.79-96.

한 연구들은 분석 방법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분석’에 의거하여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가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로는 정작 근래에 들어 일본이 빈번하게 그리고 강도를 높여가며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까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명분’ 이상으로 일본의 국익과 관련된 그 무엇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대외정책의 기조인 아시아주의가 조선, 청나라, 러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그것이 자국의 해양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의미, 특히 독도의 지정학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설정한 국가 전략 속에서 독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와 위상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주장’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한반도

1840년 아편전쟁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대사건이었다.²⁵⁾ 왜냐하면 아편전쟁은 서구 열강의 동양 진출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청국, 일본, 조선이 열강의 무력 앞에 강요된 개항을 요구받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53년 페리 제독의 내항으로 강요된 개국을 당한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서구 열강의 사상, 제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정립하려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이것이 일본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아시아주의에 입각한 팽창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²⁶⁾

25) 아리프 딜릭, “역사와 대립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p.91.

26) 中村政則·鈴木正幸, “近代天皇制国家の確立,” 『大系日本国家史(5) 近代 (2)』(東京: 東京大学出版会,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1875년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언젠가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²⁷⁾

일단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한 일본은 청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서구동점의 초기단계에서 일본은 청국과 연대하여 서구 세력에 대항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귀결이 1871년 청일수호조약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오키야마 쇼난(横井小楠)의 언급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는 입술과 이빨 같은 사이의 나라이다. 그 복철(覆徹)이 눈앞에 있어 잇몸이 시리니 보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여 일본과 청국이 하나의 운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²⁸⁾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대청(對淸) 인식은 1875년 쿠릴-사할린 교환조약과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아시아주의라는 대외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특히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노정하던 청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²⁹⁾ 왜냐하면 청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게 된다면 자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이 바로 청일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배타적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국가전략은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독일, 프랑스가 개입한 ‘삼국간섭’으로 좌절되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국으로부터 할양받았던 랴오둥(遼東)반도를 마지못해 중국에 반환하는 외교적 수모를 당했다. 이러한 삼국간섭은 러시아에 의한 일본의 패배인 동시에 일본의 대러 적대인식을 한층 고조시켜 후일 러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³⁰⁾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세력권 구축 실패를 아시아주의 실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조선 진출 이후 러시아의 움직임을 늘 경계해 왔

1976), pp.84-85.

27) 大山梓(編), 『山県有朋意見書』(東京: 吉川弘文館, 1966), p.46.

28) 松本三之介, “アジア觀の形成とその特質,” 차기벽(편역), 『일본현대사의 구조』(서울: 한길사, 1980), p.137.

29) 박영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인식과 대외정책론,” 『일본연구논총』 제25권(2007), p.181.

30) 山室信一, 『日露戦争の世紀』(東京: 岩波書店, 2005), pp.79-82.

던 것이다.³¹⁾ 이러한 사실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의 언급—“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는 핵심적 지역이므로 러시아에 의한 조선의 소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³²⁾

1898년 의화단 사건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야욕은 일본을 필두로 미영 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만주 지배 야욕은 일본이 미영 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무력충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포석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³³⁾ 영국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동청 철도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 자국의 중국 이권이 상당히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³⁴⁾ 이것이 영일동맹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 체결 제의를 거절했지만, 1903년 10월에 중국과 상하이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견제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독주에 대한 미영 제국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4년 2월에 일본은 뤼순(旅順)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에 기습 공격을 개시하고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러일전쟁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서구 열강과의 대결을 주도하고, 동북아에 새로운 일본 중심의 질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의지의 표현이었다.

러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독점적 지위가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거치면서 미영 제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조선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 즉 한반도의 식민지화가 단지 ‘시간의 문제’로만 남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³⁵⁾

더 나아가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남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³⁶⁾ 이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을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설

31)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3), p.37.

32)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266.

33) E.M. ジューコフ・江口朴郎・野原四郎(監訳), 『極東国際政治史 上』(東京: 平凡社, 1957), p.208.

34)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박화정(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영일동맹의 성립과 변질 과정』(서울: 지식산업사, 2005), pp.34-38.

35) 이기완, “일본의 대한인식과 한일관계,” 이기완, 『일본외교와 동아시아』(서울: 매봉, 2009), p.68.

정하고, 미영 제국과의 세력권 분할 합의 하에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것이다.

4.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해양 정책: 이익선의 확보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1875년 쿠릴-사할린 교환조약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을 병합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조선 병합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선 확보라는 정치·군사적 고려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즉 일본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를 거쳐 중국 대륙과 러시아로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보하겠다는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는 해양 관문인 독도, 오후츠크 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쿠릴열도와 북방도서,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양 관문인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해양 세력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었다. 즉 일본은 이들 해양 도서를 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그 군사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일 간 독도, 중일 간 센카쿠열도, 그리고 러일 간 북방도서 문제 등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국제정치적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고 어떠한 논리로 독도, 쿠릴열도,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늘날 일본이 이들 해양도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로 편입했고, 또한 러일전쟁과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조치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와 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는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일본은 무주지 선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시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은 러시아

36) 미야케 히데토시·하우붕(역),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서울: 풀빛, 1990), p.171.

와의 육상 전투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지만, 해상 전투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러시아가 발틱 함대를 해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발틱 함대와 일본의 일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욱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에도 만주 지역, 더 나아가 중국 전역에서 러시아와 세력권을 둘러싼 쟁탈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오키섬에서 서북으로 157km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도사(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다.³⁷⁾ 그리고 1905년 5월 27일 쓰시마 해전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독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7월 말 망루를 설치했다.

망루 설치 이후 일본은 독도와 마쓰에 사이에 해저 전선을 부설하고 군용 통신선을 완성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병합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 함대의 해상 작전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은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입각한 대륙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자국 안보에 위협이 미칠 수 있는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병참 기지 확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한일병합에 대해 19세기 말 한반도 및 일본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해 조선의 병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은 대륙 침략을 위한 해양 교두보 확보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후일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발표했던 ‘일본 열도 불침공모론(不沈空母論)’과 소련 함대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3해협 봉쇄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³⁸⁾ 특히 3해협 봉쇄론은 소련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쓰시마 해협, 쓰가루 해협(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소야 해협(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 중 어느 한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유사시에 3해협을 봉쇄하여 소련 함정 및 잠수함의 3해협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 쓰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해군의 함정 및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동해의 중앙부에 위치

37) 이선민, 『독도 120년』(서울: 사회평론, 2020), p.49.

38) 小野耕二·이기완(역), 『일본 현대 정치사』(서울: 케이시, 2003), p.202.

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이면에는 한반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해양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지어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일본이 비록 독도, 센카쿠열도, 그리고 쿠릴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방식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 교두보 확보라는 목표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17세기 이래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은 1855년 2월에 체결된 러일통상우호조약(일명, 시모다 조약)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왜냐하면 시모다 조약 제2조에서 “러일 양국의 국경은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로 결정하여 이투루프 이남은 일본의 영토로 하고, 우루프 이북의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로 각각 확인했으며, 사할린은 양국이 공유하는 잡거지로 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할린에서 양국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이를 빌미로 일본은 시모다 조약을 체결한지 약 20년 후인 1875년 러시아와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쿠릴열도 전체를 ‘일본령’으로 하는데 성공했다.³⁹⁾

〈표 1〉 북방도서를 둘러싼 관할권 변화

조약	점유지역	점유국	특이사항
러일통상우호조약 (시모다조약)	남 쿠릴열도 (북방 4개 도서)	일본	사할린 공동소유
	우루프 이북 쿠릴열도	러시아	
쿠릴-사할린 교환조약	쿠릴열도 전체	일본	
	사할린 전체	러시아	

출처: 우평균, “북방도서 영유권 문제와 러일관계,” 이기완(편), 『동맹과 영토분쟁』(창원: 성연, 2013), p.266.

3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s Northern Territories* (Toky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7), p.2.

그런데 이러한 영토 교환의 이면에는 쿠릴 열도가 러시아 극동함대의 중심지인 오후츠크 해와 캄차카 반도를 통해 러시아 본토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또한 19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세력권 구축을 둘러싼 서구 열강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쿠릴열도의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통해 해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일본이 1960년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자, 북방도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소련이 지상권 병력을 주둔시켰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북방도서와 쿠릴열도는 러일 양국이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해 나가고 동시에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북방도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며, 반대로 러시아는 북방도서가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얻은 특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에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면서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으로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교환했던 것이고, 독도에 대한 강제 편입도 그러한 목적 실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센카쿠열도 편입 조치도 그 정치적 의도에 있어서는 독도 편입 조치와 같다고 하겠다. 청일 양국은 열강의 무력 앞에서 개국을 강요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을 통해 후발 제국주의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했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서 자국의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국과의 경쟁적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했고, 이 와중에 청국이 자신의 세력권이 된 류큐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류큐제도에 대한 세력권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청국에 대한 해양 교두보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1895년 1월 센카쿠열도의 오키나와 부속 도서로의 편입조치로 이어졌던 것이다.

일본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선에서 세력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95년 1월에 내각회의를 통해 센카쿠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센카쿠열도가 청일전쟁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 측의 입장에 따르면 청일전쟁과 센카쿠열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일본에 할양했던 타이완 및 펑후제도 속에 센카쿠열도가 포함된다는 한다.

반면에 일본은 센카쿠열도와 청일전쟁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청국으로부터 할양받았던 타이완 및 평후제도 속에 센카쿠열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사실로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 편입했던 것이 1895년 1월이고, 5월에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를 예측해 미리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 아시아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기동 공간으로서의 해양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센카쿠열도를 강제로 편입했던 것이다. 당시 오키나와로부터 4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를 편입했던 것은 센카쿠열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편입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주의라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센카쿠열도 강제 편입의 이면에는 해양 통제권 확보라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한창 중인 와중에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비밀리에 강제로 편입했던 것은 그 섬들이 가지는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며, 일본의 안보 이익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일본이 미국에게 요청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2021년 3월 16일에 개최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간 2+2회의에서도 미일 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표 2〉 센카쿠열도에 대한 입장 비교

시기	관할국	중국	일본
19세기 말	중국	중국의 고유 영토	무주지
청일 전쟁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타이완, 평후제도(澎湖諸島)와 함께 강제 할양	강제할양과 무관, 1895년 1월에 내각 회의를 통해 오키나와에 편입

출처: 하도형, “중일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 136.

40) 村田忠禧, “先覺列島/釣魚島爭議,” 『百年潮』 第6期(2004), p.60.

이상에서 살펴본 쿠릴열도 확보, 센카쿠열도 강제 편입, 그리고 독도 강제 편입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개별적이고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 통제권 확보를 통해 아시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주의라는 일본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의 형성과 전개 속에서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이에 따른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의 정치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조치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체제에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위협세력인 러시아의 남진을 봉쇄하고 일본의 ‘이익선’인 한반도를 점령하는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아시아주의라는 대외정책의 기초 하에 한반도를 거쳐 중국 대륙과 러시아 전역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시킬 나날 계획이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를 자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다. 일본은 1875년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통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완화된 틈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청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대비하여 국방력을 증강시켜 나갔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함대의 이동 경로를 감시할 필요성에서 동해에 대한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쿠릴-사할린 교환조약을 통한 쿠릴열도 장악, 센카쿠열도와 독도의 강제 편입 조치 등은 한·중·러 간의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아시아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긴요한 해양 교두보 확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자국의 국가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해양영토 분쟁의 기원과 쟁점』 국제학술대회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 군사 전략적 측면으로

2021.06.18(금)

동명대학교 나승학

Contents

I. 서론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1. 러일전쟁 배경 및 작전 경과
2. 일본의 울릉도·독도 지리적 인식 및 경계 형성
3. 러일전쟁 시기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III.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1. 독도의 지리적 인식
2. 러시아 및 유럽국가의 독도에 대한 인식
3.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및 평가

IV. 결론

Part 1.

서론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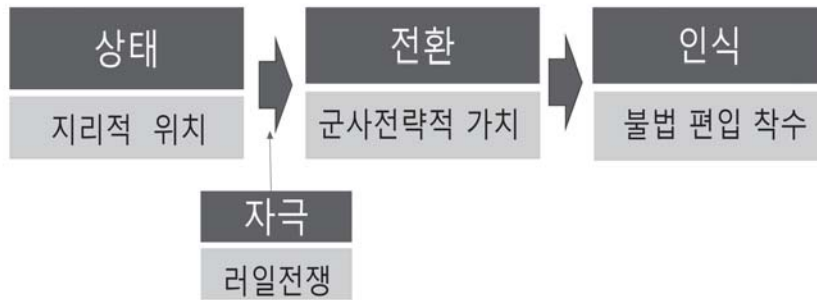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은주시청합기』, 『원록각서』, 『원록각서』, 『죽도고』, 『죽도고증』 등의 사료를 통해서 고유 영토설 주장
- ✓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始發하였는지 연구 필요
- ✓ 독도의 지리적 환경과 군사전략적 가치 인식 고찰
- ✓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도를 불법 영유 규명

I. 서론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설 주장: 隱州視聽合記, 竹島考, 竹島考證 등



Part 2.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러일전쟁 배경 및 전쟁 경과

- ✓ 청일전쟁 결과, 일본의 승리로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 ✓ 일본이 요동반도, 타이완섬, 팽호 제도 영유 확정
- ✓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주도/일본에 대항
- ✓ 러청밀약 체결, 東清鐵道敷設權 획득
- ✓ 일본은 러청밀약에 수 차례 항의/滿韓交換論 제시
- ✓ 1903년, 「한반도의 39° 선 이북지역 중립지대」안, 한국을 '도마 위의 생선' 취급
- ✓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쟁, 영일동맹 체결
- ✓ 러시아도 청과 滿州還付條約 체결
- ✓ 러일간 관계 악화/러일전쟁이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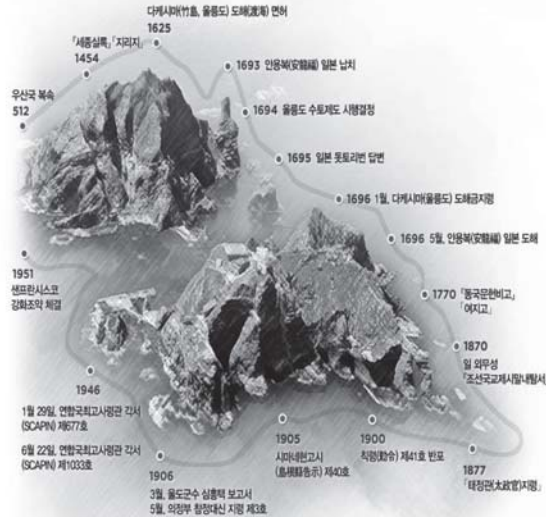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일본의 울릉도·독도 지리적 인식 및 경계 형성

- ✓ 고려 말 이전까지 한반도와 일본간의 이용되는 바다, 섬이 아님
- ✓ 고려 말~조선 초. 왜구, 임진왜란 등을 통해 일본식 명칭 부여 시작
- ✓ 조선시대, 刷還政策 이후 일본인들이 불법 도해 시작/다케시마, 마쓰시마 명칭
 - * 마쓰시마(독도)를 근거로 일본인의 역사적 독도 인식과 실효지배 부각
 - 단순한 기록으로 주장[오키섬 및 울릉도로 부터의 거리에 관한 기술]
- ✓ 1693년 안용복, 박어둔의 주장[에도막부, 울릉도 도해 금지 정책]
- ✓ 울릉도 도해 중단/지역민의 반감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논쟁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지리적 · 역사적 이 유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 죽도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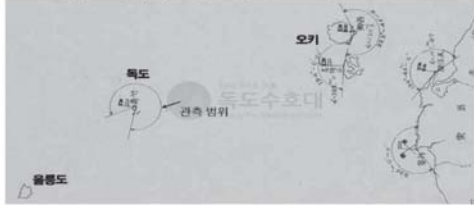


해군 망루 설치 목적은 강치 잡이를 허가하기 위
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은 러일전쟁 중 전략적 거점을 확보
하기위한 독도 망루 설치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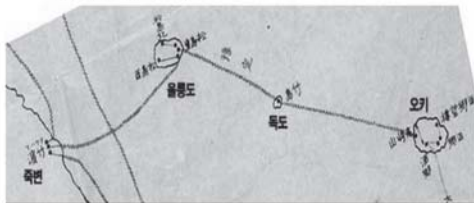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 망루도 [마이즈루 진수부 소관]



울릉도와 독도사이에는 울릉도 동망루에서 관측 가능
* 마이즈루시에 있던 일본 해군 진수부

- 해저 전선 부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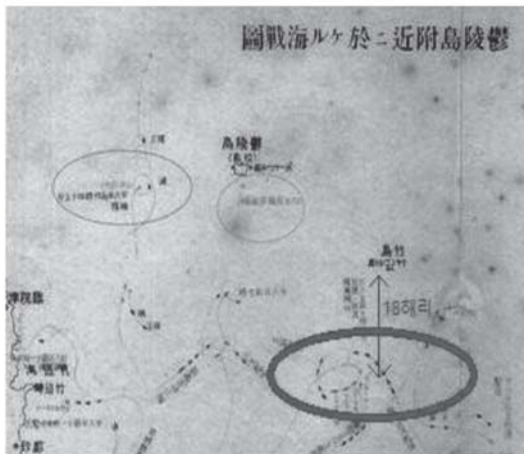


주변-울릉도 해저 전선을 독도-마츠 설치(예정),
사세보의 해군진수부까지 연결(예정)

II.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 독도부근 러일 대해전(1905.5.28)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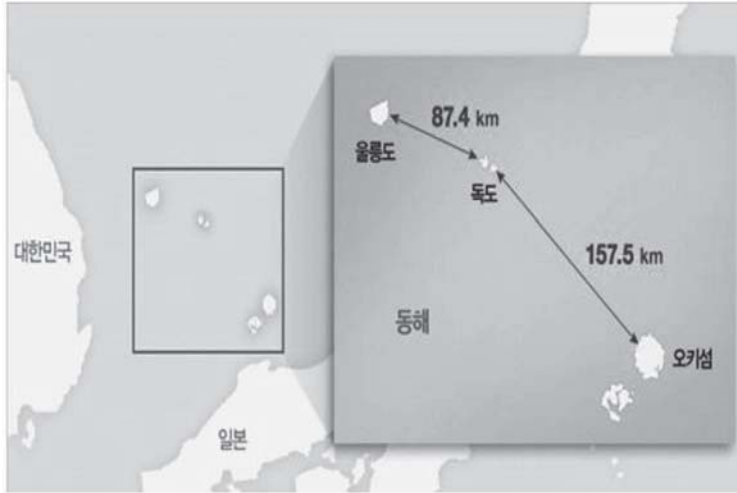


일본 연합함대에게 러시아 발트 연합함대가 참패하였으며, 일본 해군의 승리로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군사적 가치를 전세계에 깊이 각인시킴

* 출처: 신용하, 일제의 독도 해군망루 설치와 독도부근 러일대해전, 독도연구 제26호, 2019, p.23.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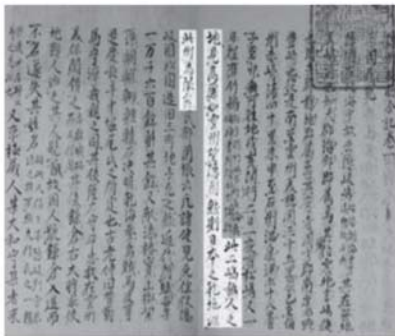


* 하나의 생활권: 육안 식별거리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인식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사이토 호센이, 최초 사료]



이 두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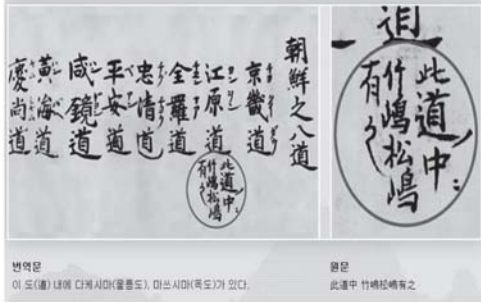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인식

- 원록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1696]

원록구경자년조선주작안암권지각서



변역문

이 도(道) 내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있다.

원문

此道中 竹島松島有之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자산(子山·당시 독도의 조선명)’으로 모두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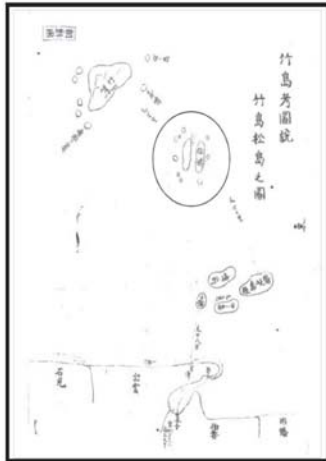
* 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인식

- 죽도고[竹島考, 1828. 오카지마 마사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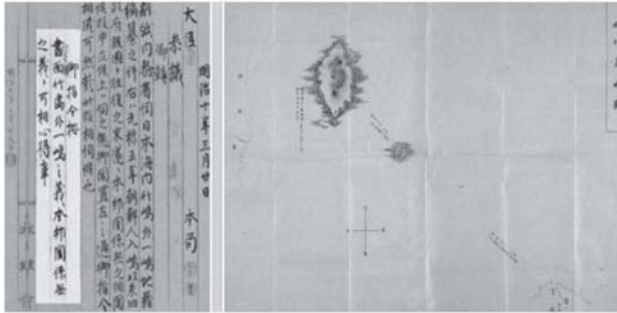
- ✓ 다케시마 총설. 다케시마와 오키국옛 약 백 여러 떨어진 조선국 동해안에 있는 孤島라고 하면서 울릉도 도해 허가와 취소 과정 기술
- ✓ 다케시마가 ‘조선의 동해안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조선 정부의 쇄환정책으로 비워져 있는 섬,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유라는 점을 인정(독도 포함)

출처: 岡嶋正義, 1881, 『竹島考』, 정영미 역, (경북 독도사료연구회), 2010, pp.11-13.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인식

-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18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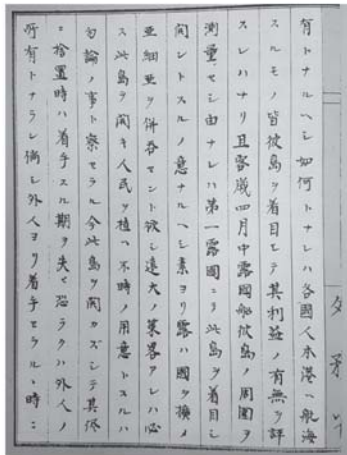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
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독도의 지리적 인식

- 죽도고증[竹島考證, 1876—1881.8, 외무성 서기관(기타자와 마사나리)]



러시아가 아시아를 병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필시 그 섬을 개척하고 사람을 옮겨 불시에 사태에 대
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섬을 개척하지 않고 내
버려 두면 기회를 잃어 아마도 외국인 소유가 되어 버린다.

* 다케시마(울릉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를 탐색한 내용
[임란 前, 울릉도가 조선 땅, 이후는 일본 땅이라고 결론]

출처: 北澤正誠, 1881, 『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Ⅱ, p.433.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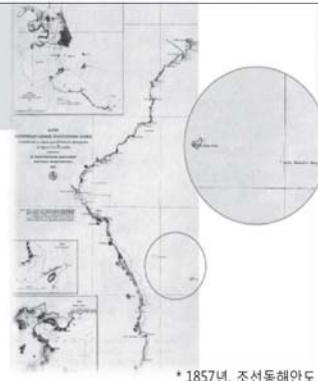
러시아 및 유럽국가의 독도에 대한 인식

✓ 러시아

-1857. Oliwuc Felsen(서도), Menelaus Felsen(동도)

[해군부 수로국, 조선동해안도]

-1896. 울릉도와 부속도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 별목권 획득



* 1857년, 조선동해안도

✓ 유럽국가

-1849.1.27. 프랑스 포경선 Liancourt 호, Liancourt Rock

[해군성 수로지, 해도]

-1885. 영국 Hornet 호, Hornet Rock



* 1851년, 태평양전도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및 평가

✓ 섬의 명칭 혼란 사용-울릉도에 대한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명칭 전도를 Siebold 지도에서 기인설 [죽도고증]

* 18세기 말~ 19세기 초: 마쓰시마(울릉도) 인식

✓ 오키노쿠니 마쓰시마:

-메이지 시대: 마쓰시마(울릉도)→에도 시대, 다케시마(울릉도) [죽도도설]

✓ 지리적 실체로 인식:

-Liancourt Rocks→1905년, '오키노쿠니 마쓰시마' 간주/'다케시마(독도)' 명명

* 에도시대: 마쓰시마(울릉도), 다케시마(독도) 명칭 부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Ⅲ. 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및 평가

- ✓ 러일전쟁 前, 러시아의 극동 관문이 동해라고 판단 [러시아가 독도를 확보 우려]
- ✓ 울릉도에 통신부대 운영 [원산 경유해 만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지원]
- ✓ 러일전쟁시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 2함대. 페테르부르크 출발 [1904년, 일본과의 결전]
- ✓ 1905.2.22,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

Part 4.

결론

IV. 결론

논의 및 결론

- ✓ 일본의 독도 인식은 고려 말~조선 초. 왜구, 임진왜란 등을 통해 일본식 명칭 부여
- ✓ 조선시대, 쇄환정책 이후 일본인들의 불법 도해/다케시마, 마쓰시마 명칭 사용
- ✓ 1693년 울릉도 도해 금지 정책 이후, 지역민의 반감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논쟁 시작
- ✓ 러일전쟁 시기에 군사전략적 가치 인식으로 본격적인 영유권 불법 편입

감사합니다